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법제사법위원회

2024회계연도 헌법재판소 소관 결산 검 토 보 고

■ 일 반 회 계

2025. 8.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은 정

차 례

I. 결산 개요(일반회계)	1
1. 조직 및 정원	1
2. 세입결산	3
3. 세출결산	4
4. 재무결산	7
5. 2024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검토내용	10
II. 검토의견	15
1. 인건비(1001-150)	15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15
나. 인건비 집행률 제고 필요	16
다.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 관련 제도 개선 필요	21
2. 본부기본경비(1011-250)	26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26
나. 실소요 기반 예산 편성으로 직책수행경비의 집행률 제고 필요	27
3. 국선대리인보수 등(1031-300)	30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30
나. 참고인 연구비 등 사업의 활용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31

4. 재판활동운영지원(1031-301)	36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36
나. 사건처리 지연 문제 해소를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 필요	37
다. 성과지표 목표치를 적극적 업무 수행의 관점에서 설정할 필요	46
5. 본부운영지원(1032-302)	51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51
나. 어린이 홈페이지 운영사업의 수행 방식 개선 필요	52
다. 정책연구용역 사업의 수의계약 최소화 및 연구수행기관의 다변화 방안 마련 필요	57
라. 전기차 충전기 이설공사: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정확성 제고 필요	61
6. 헌법재판연구원운영지원(1033-303)	65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65
나. 국외통신원 운영 사업의 활성화 방안 등 마련 필요	66
다. 특근매식비의 과다편성으로 인한 연례적 집행 부진	72
7. 해외연수(1034-304)	74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74
나. 연임 헌법연구관 연수에 대한 관리 필요	75
8. 국제교류(1034-305)	81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81
나. 연례적 세목조정 지양 필요	82
9. 헌법재판소 발간물 관련	86
가. 헌법재판소 발간물 관련 결산 개요	86
나. 발간물 관련 특정업체에 대한 계약편중 완화 필요	87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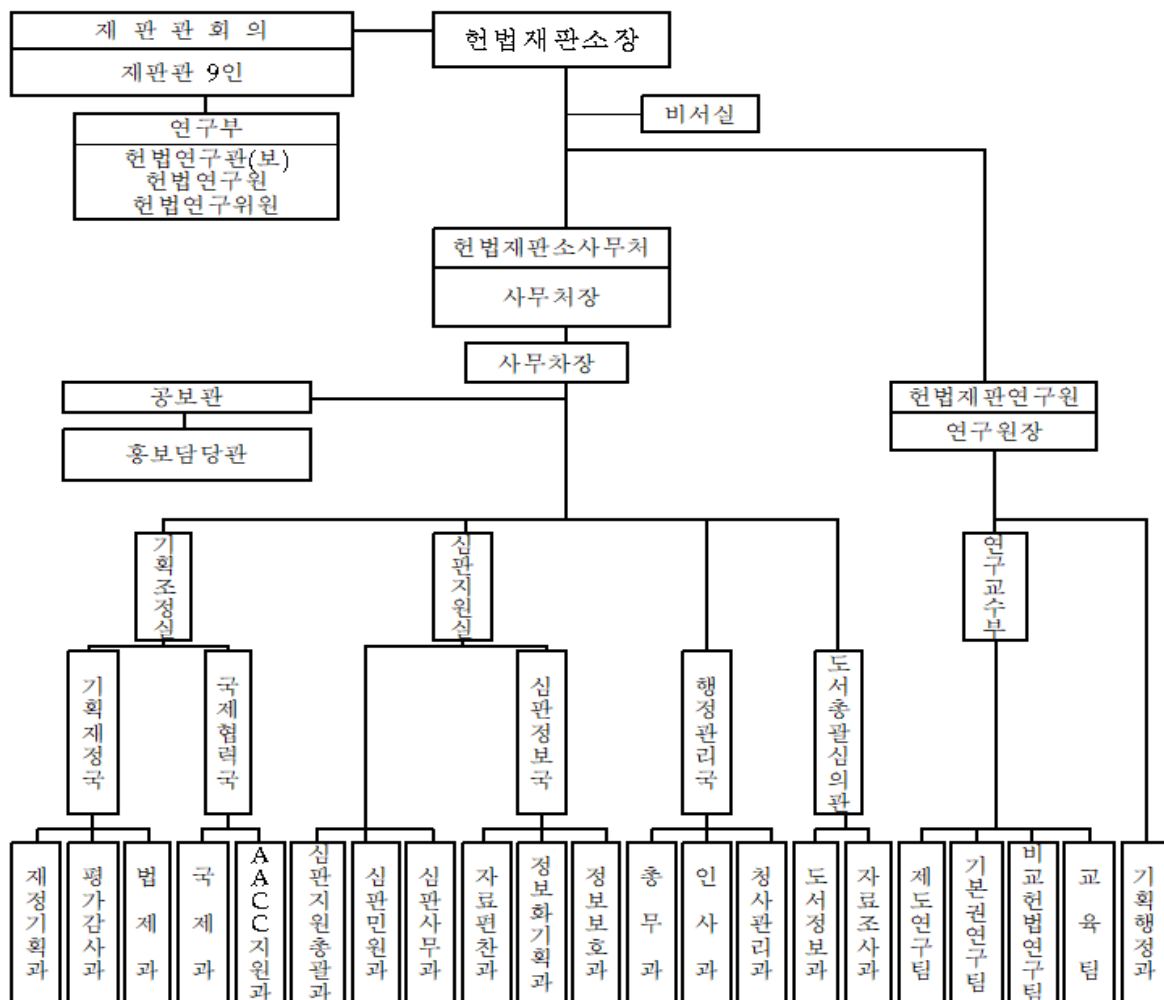
1. 최근 3년간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조치결과	94
2. 연도별 심판사건 접수·처리 현황	121

I. 결산 개요(일반회계)

1. 조직 및 정원

-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인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 및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3개)로 이루어진 재판부와 연구부, 헌법재판소사무처(2실·4국·1관·1심의관·1담당관·16과) 및 헌법재판연구원(1부·4팀·1과)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4년도 12월 31일 기준 정원은 총 352명이며, 현원은 총 335명임.

< 헌법재판소의 조직도 >



<헌법재판소 정원 및 현원 현황>

(2024년 12월 31일 기준)

구분		합계	정무직	특정직	특정직 · 일반직	별정직	일반직
합계	정원	352	11	66	12	2	261
	현원	335	8	64	7	0	256
본부	정원	314	11	66	2	2	233
	현원	302	8	64	1	0	229
소속	정원	38	—	—	10	—	28
	현원	33	—	—	6	—	27

주: 현원의 경우 별도 정원(6개월 이상 휴직, 파견 및 교육훈련자 등) 제외
 자료: 헌법재판소

2. 세입결산

(단위: 백만원)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C/A (%)	C/B (%)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641	680	680	106.1	100.0	0	0

자료: 헌법재판소

- 2024년도 세입예산액은 6억 4,1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억 8,000만원이며, 세입징수액은 전년 3,600만원¹⁾ 대비 1797.7%가 증가한 6억 8,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전액 수납됨.

주요 세입현황을 살펴보면, 기타경상이전수입은 관사 임차보증금 6억원과 연가보상비 반납액 등 4,900만원, 면허료및수수료는 채용응시료 600만원, 기타잡수입은 헌법재판연구원 교육비 및 정보공개수수료 등 2,500만원임.

<2024년도 세입결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구분	2022결산	2023결산	2024년			2025예산
			예산(A)	결산(B)	B/A(%)	
기타경상이전수입	23	5	610	649	106.3	210
면허료및수수료	5	5	9	6	69.8	10
기타잡수입	17	26	22	25	114.6	24
총 계	45	36	641	680	106.1	244

자료: 헌법재판소

1) 2023년도의 경우 기타경상이전수입은 5백만원, 면허료및수수료는 5백만원, 기타잡수입은 26백만원임

3. 세출결산

(단위: 백만원)

당 초 예산액	예산 결정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금 사용액	전용 증(△)감액				
56,766	—	—	—	56,766	54,418 (95.9%)	—	2,348 (4.1%)

자료: 헌법재판소

-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567억 6,600만원임.
-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5.9%인 544억 1,800만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1%인 23억 4,800만원임.
- 지출액 544억 1,800만원의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로	322억 200만원
기본경비로	71억 900만원
재판활동지원사업으로	8억 4,900만원
본부운영지원사업으로	42억 2,100만원
헌법재판연구원 운영지원사업으로	18억 6,400만원
국제교류협력사업으로	10억 1,100만원
정보자료운영사업으로	71억 6,200만원

각각 지출되었는바, 인건비와 물건비가 503억 6,200만원²⁾으로 전체 지출액 중 92.6%를 차지하고 있음.

2) 성질별 세출실적: 인건비 342억 5,900만원, 물건비 161억 300만원, 이전지출 4억 100만원, 자산취득 36억 5,500만원(2024회계연도 헌법재판소 소관 결산보고서, p. 14)

□ 불용액 23억 4,800만원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휴직 및 퇴직·신규채용 공백기간 등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14억 4,400만원,

각 사업별 집행잔액으로 물건비 5억 4,500만원, 이전지출 6,400만원, 유형자산 등 자산취득비 2억 7,000만원, 예비금 2,500만원이 각각 불용됨.

< 2024년도 세출결산 총괄표 >

(단위: 백만원)

구분	2022결산	2023결산	2024년				2025예산
			예산		결산(B)	B/A (%)	
			본예산	추경(A)			
총 계	50,072	53,752	56,766	56,766	54,418	95.9	58,424
1000 헌법재판소운영	50,072	53,752	56,766	56,766	54,418	95.9	58,424
1001 인건비	29,813	30,995	33,533	33,533	32,202	96.0	34,692
인건비 (1001-150)	29,813	30,995	33,533	33,533	32,202	96.0	34,692
1011 기본경비	6,088	6,686	7,432	7,432	7,109	95.7	7,381
본부기본경비 (1011-250)	5,680	6,270	6,991	6,991	6,697	95.8	6,955
헌법재판연구원기본경비 (1011-251)	408	416	441	441	412	93.4	426
1031 재판활동지원	733	703	875	875	849	97.0	798
국선대리인보수등 (1031-300)	106	119	127	127	111	87.4	127
재판활동운영지원 (1031-301)	627	584	748	748	738	98.7	671
1032 본부운영지원	3,536	3,587	4,624	4,624	4,221	91.3	4,292
본부운영지원 (1032-302)	3,536	3,587	4,624	4,624	4,221	91.3	4,292
1033 헌법재판연구원 운영지원	1,825	1,837	1,878	1,878	1,864	99.3	1,865
헌법재판연구원운영지원 (1033-303)	1,825	1,837	1,878	1,878	1,864	99.3	1,865
1034 국제교류협력	967	1,081	1,093	1,093	1,011	92.4	1,179
해외연수 (1034-304)	518	580	506	506	494	97.6	565
국제교류 (1034-305)	449	501	587	587	517	88.0	614
1035 정보자료운영	7,110	8,862	7,306	7,306	7,162	98.0	8,192
재판자료확충 (1035-306)	367	402	470	470	460	98.0	386
헌법재판정보화 (1035-500)	6,451	8,163	6,443	6,443	6,310	97.9	7,499
전자도서관운영 (1035-501)	292	297	393	393	392	99.7	307
1036 예비금	-	-	25	25	-	-	25
헌법재판소예비금 (1036-307)	-	-	25	25	-	-	25

자료: 헌법재판소

4. 재무결산

가. 재정상태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A)	2023(B)	증 감(A-B)	
			금 액	비 율 (%)
자 산	213,911	214,118	△207	△0.1
부 채	3,749	3,819	△70	△1.8
순자산	210,162	210,299	△137	△0.1

자료: 헌법재판소

- 2024회계연도 말 헌법재판소 자산은 2,139억 1,100만원으로 2023회계연도 말 대비 2억 700만원(0.1%) 감소함.
 - 일반유형자산이 6억원, 기타비유동자산이 2억 400만원 증가하였고, 유동자산이 3억 4,900만원, 무형자산이 6억 6,100만원 감소하였음.
- 2024회계연도 말 부채는 37억 4,900만원으로 2023회계연도 말 대비 7,000만원(1.8%) 감소함.
 - 장기채입부채가 400만원 증가하였고, 유동부채가 7,400만원 감소하였음.
- 2024회계연도 말 순자산은 2,101억 6,200만원으로, 2023회계연도 말 대비 1억 3,700만원(0.1%) 감소함.

나. 재정운영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A)	2023(B)	증 감(A-B)	
			금 액	비 율 (%)
I. 프로그램순원가 ³⁾	59,216	56,245	2,971	5.3
II. 관리운영비	—	—	—	—
III. 비배분비용 ⁴⁾	—	—	—	—
IV. 비배분수익 ⁵⁾	80	36	44	122.2
V. 재정운영순원가 (I + II + III - IV)	59,136	56,209	2,927	5.2
VI. 비교환수익 등 ⁶⁾	—	—	—	—
VII. 재정운영결과 (V - VI)	59,136	56,209	2,927	5.2

자료: 헌법재판소

□ 2024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는 591억 3,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9억 2,700만원(5.2%) 증가함.

- 프로그램순원가 592억 1,600만원에서 지출금반납금 등의 비배분수익 8,000만원을 차감한 금액인 재정운영순원가는 591억 3,600만원임.

3) 국가회계실체가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 투입한 프로그램총원가에서 프로그램의 운영에 따른 수익을 차감한 순원가를 말하는데, 헌법재판소의 경우 '1000] 헌법재판소운영'의 1개의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있음.

4) 국가회계실체가 투입한 비용 중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프로그램에 배부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비용(자산재평가손실, 자산처분손실 등)을 말함.

5) 국가회계실체에서 발생한 수익 중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이 없거나 특정 프로그램으로 추적하는 것이 불가능한 수익(이자수익, 자산재평가이익, 자산처분이익 등)을 말함.

6)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국세, 부담금, 기부금, 무상이전 및 제재금 등의 수익 등을 말함.

다. 순자산변동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A)	2023(B)	증 감(A-B)	
			금 액	비 율 (%)
I.기초순자산	210,299	207,755	2,544	1.2
II.재정운영결과	59,136	56,209	2,927	5.2
III.재원의조달및이전	58,999	58,753	246	0.4
IV.조정항목	—	—	—	—
V.기말순자산 (I - II + III + IV)	210,162	210,299	△137	△0.1

자료: 헌법재판소

- 2024회계연도 기초순자산은 2,102억 9,900만원이고, 재정운영결과는 591억 3,600만원임.

재원의조달및이전은 589억 9,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4,600만원(0.4%) 증가하였음.

- 기초순자산에서 재정운영결과를 차감하고 재원의 조달 및 이전금액을 합제한 금액인 기말순자산은 2,101억 6,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3,700만원(0.1%) 감소함.

5. 2024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검토내용

- 헌법재판소는 2024년도에 주요 정책목표로 소통을 통한 심판지원체계 발전 도모, 인적 역량 강화, 도약을 위한 미래 준비,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춘 행정, 국제 활동을 통한 지식의 교류와 축적 등을 설정하였음.

이와 같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는 일반회계 13개의 세부사업 수행을 통하여 헌법재판 및 심판사건 연구 업무의 효율적 지원, 대국민 재판서비스 제고, 해외 헌법재판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등을 추진하였음.

- 2024회계연도 헌법재판소 소관 일반회계 결산을 보면, 예산현액 567억 6,600만원 중 544억 1,800만원을 집행하였고, 23억 4,800만원은 불용처리하여 2024년 집행률은 95.9%임.

- 2024회계연도 헌법재판소 결산을 분석한 결과, 주요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음.

첫째, 헌법재판소 인건비 사업의 불용률(4.0%)은 정부 전체 일반회계 인건비 불용률(1.2%)과 비교하여 과도하고, 2023년도 불용률(2.7%)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헌법재판소는 인력에 대한 충원계획을 보다 면밀히 수립하고 실제 소요인력이 반영된 적절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인력 운용의 적정성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타 기관과 달리 특별한 공적여부에 대한 심사규정 및 명예퇴직 수당이 환수되는 경우 특별승진 임용을 취소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데,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을 개정하여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을 그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운용할 필요가 있음.

둘째, 헌법재판소의 본부기본경비 중 직책수행경비 예산과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에는 6,600만원, 2023년에는 5,000만원, 2024년에는 4,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바, 지속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전년도에 준하는 관례적 예산편성으로 인해 면밀한 소요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예산안 편성 또는 심의 단계에서 직책수행경비의 실소요를 정밀히 파악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셋째, 참고인 연구비 등 사업은 예산 편성 당시 집행 예상 건수(6건)를 하회(2020년 5건, 2021년 2건, 2023년 2건, 2024년 3건)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참고인 지정시 특정 분야로의 쏠림현상과 복수의 전문가 지정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바, 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재판 참고인으로 활용하고, 전문가마다 학문적 배경이나 실무 경험, 해석 방식이 다른 점 등을 고려하여 복수의 전문가를 참고인으로 지정하는 등 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넷째,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심판사건 처리기간 지연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처리기간에 있어 유의미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요인을 분석하여 헌법소원 등 심판사건의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심판사건 처리기간 지연이 장기미제 사건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한시적으로 운영한 장기미제부상설화, 사건의 경중, 난이도,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한 사건의 선별배정 체계 마련 등 심판절차의 효율성과 신속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헌법재판소운영(1001) 프로그램의 성과지표를 심판사건처리율(처리사건/접수사건×100)로 설정하여 그 성과의 달성도를 측정하고 있는데, 2025년도 성과계획서상 목표치를 2024년도의 실적에 비해 하향된 수치를 설정하였으므로, 향후 적극적 업무수행의 관점에서 목표치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이를 도달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하나의 성과지표로 헌법재판소 프로그램의 성과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본부운영지원 사업 중 어린이 홈페이지 운영 사업의 홈페이지 방문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의 경우 방문건수가 가장 많은 달인 7월(518,386건)과 가장 적은 달인 2월(30,330건) 사이에 약 17배의 차이를 보여 이벤트를 개최한 달과 그 외의 달의 방문건수에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바, 향후 특정 이벤트 기간 외에도 사업대상자의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운영 방식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헌법재판소의 정책연구용역 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특정 학회와의 수의계약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바, 향후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함에 있어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하여 수의계약 비중을 낮춰 경쟁입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정책연구용역 사업 수행기관 선정을 다변화하여 업무 수행 과정에 다양한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운영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본부운영지원 사업에서 별관 지하 3층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차 충전기 2대의 지상 또는 지하 1층 이설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집행 시 1대의 전기차 충전기만 이설하고 4대의 전기차 충전기를 추가로 설치한바, 확정된 예산을 편성목적에 맞게 집행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여섯째, 헌법재판연구원운영지원 사업 중 국외통신원 운영 사업은 지속적으로 불용[2022년 150만원(불용률 41.6%), 2023년 60만원(불용률 16.7%), 2024년 180만원(불용률 50.0%)]이 발생하고 있는바, 국외통신원에 대한 활용도가 낮은 측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활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활동 중인 13기 국외통신원(2024.9.~2025.9.)의 경우 신규 지원율이 낮아 지원자가 전원 위축(경쟁률 1:1)된 상황이므로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외통신원의 지원을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직무 수행에 적합한 양질의 국외통신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고,

최근 3년간 특근매식비의 예산 및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연례적으로 50%가 넘는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헌법재판소는 특근매식비의 집행실적을 반영하여 예산의 과다 편성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전년도에 준한 관례적 예산편성이 아닌 실소요를 감안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일곱째, 해외연수 사업에서 실시하는 연임 헌법연구관 연수와 관련하여 충실한 해외연수보고서 작성을 통해 해당 연수가 그 목적 및 내규상 취지에 맞게 운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결과보고서 제출의 적시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여 내규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여덟째, AACC 연구사무국 운영 사업 관련하여, AACC 연구사무국 사무실의 관리비 부족에 따라 연례적으로 일반수용비(210-01) 세목에서 공공요금및제세(210-02) 세목으로의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동일한 사유로 인한 반복적·연례적 세목조정을 지양하고 편성된 예산이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대로 충실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아홉째, 헌법재판소는 각종 발간물을 발간하면서 특정 두 업체와 다수의 계약을 체결한 측면이 있는바, 발간물 계약에 있어 관례적인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다양한 발간물 업체들을 발굴하여 특정 업체에 대한 계약편중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II. 검토의견

1. 인건비(1001-150)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인건비 사업은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헌법재판소 공무원 등⁷⁾의 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액 335억 3,300만원 중 322억 200만원이 집행되고 13억 3,1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4년도 인건비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2025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예산액
인건비	33,533	—	33,533	32,202	1,331	34,692
보수(110-01)	31,760	—	31,760	30,465	1,295	32,793
기타직보수(110-02)	1,539	—	1,539	1,504	35	1,661
연가보상비(110-05)	234	—	234	233	1	238

자료: 헌법재판소

7) 직제상 정원 352명, 별도정원 11명, 기타직 22명(청원경찰 5명, 전문임기제 17명)

나. 인건비 집행을 제고 필요

□ 헌법재판소 2024년도 인건비 사업의 불용률은 4%(불용액 13억 3,100만원)로, 2023년도 불용률 2.7%(불용액 8억 6,500만원)에 비해 1.3%p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과거 국회 예결산 심사 시 헌법재판소는 인건비 불용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받았는데, 인건비 불용률은 2020년도 7.3%, 2021년도 6.7%, 2022년도 4.6%, 2023년도 2.7%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였음.

< 최근 5년 인건비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연도	본예산	추경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2020	30,139	29,578	29,578	27,377	2,201	7.3%
2021	31,280	31,280	31,280	29,167	2,113	6.7%
2022	31,280	31,237	31,237	29,813	1,424	4.6%
2023	31,860	31,860	31,860	30,995	865	2.7%
2024	33,533	33,533	33,533	32,202	1,331	4.0%

자료: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는 정무직 직위의 장기간 공석, 휴직·퇴직으로 인한 결원 발생, 헌법연구관의 겸임, 명예퇴직수당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2024년도 인건비 사업의 불용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함.

< 최근 5년 사유별 인건비 불용내액 >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합계	헌법재판관 겸임	휴직·퇴직 등 결원	명퇴수당 집행잔액	고위직 보수동결	기타
2020	29,578	27,377	2,201	250	1,409	67	285	190 (국외연수 과다편성)
2021	31,280	29,535	2,113	274	1,664	17	100	58 (연가보상비)
2022	31,280	29,813	1,424	257	957	—	153	57 (연가보상비)
2023	31,860	30,995	865	257	566	—	—	42 (연가보상비)
2024	33,533	32,202	1,331	257	813	260	—	1 (연가보상비) 8)

자료: 헌법재판소

□ 그러나 주요 직위(헌법재판관, 사무차장)에 대한 예측하지 못한 공석이 있었다하더라도 휴직·퇴직 등에 따른 정원 미달 운영은 헌법재판소에 국한되는 특이사항이 아니며, 2024회계연도 정부 전체 일반회계 인건비 불용률 1.2%⁹⁾와 비교할 때, 헌법재판소의 인건비 집행률은 제고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짐.

— 참고로, 국회사무처의 인건비 불용률은 1%이며¹⁰⁾, 대법원의 일반인건비 불용률은 0.02%임¹¹⁾.

8) 연가보상비의 경우 최근 불용률이 20% 내외로 집행이 부진하였는데, 2024년도에는 기존 5일의 연가보상비 지급일수를 1급~6급은 7일, 7급~9급은 9일로 확대한바 불용액이 대폭 축소되었음. 다만, 연가보상비 지급일수의 확대는 연가보상비 수령 유인에 따라 직원들의 연가 사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바 일·가정 양립이라는 사회적 지향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9)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10) 2024회계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사업설명자료 II-1(국회)

- 사유별 인건비 불용내역을 보면 휴직·퇴직 등에 따른 결원에 대한 인력충원을 적시에 하지 못하여 야기되는 불용액이 8억 1,300만원으로 주된 사유를 차지하고 있는데, 인력충원 계획을 보다 면밀히 수립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¹²⁾.
-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2024년도에 휴직시기가 있었던 일반직공무원 총 26명 중 휴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인원은 23명이며, 이 중 9명은 대체인력 채용으로 충원하고, 11명은 승진 또는 복직자를 통해 결원을 충원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에 따른 별도정원 운영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¹³⁾.
 - 육아휴직 등의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인력충원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지 않을 경우 인건비 사업의 집행부진 뿐 아니라 인력부족에 따른 현업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

11) 2024회계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사업설명자료 II-1(대법원)

12) 헌법연구관의 채용절차는 연 1회(9월~11월) 진행하고 있으며, 임용시기는 2024년 기준 2월, 4월, 8월임(합격자의 임용가능 시기에 따라 상이).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인사 소요 발생 시 수시로 채용절차를 진행하여 임용.

13)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법연구관의 경우 업무의 특성 및 채용자격을 고려할 때 한시적 대체인력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연 1회 채용절차를 통해 결원을 충원하고 있다고 설명함.

「국가공무원법」 제43조(휴직·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 ① 공무원이 제71조제1항제1호·제3호·제5호·제6호, 제71조제2항 또는 제73조의2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직하면 휴직일부터 그 휴직자의 직급·직위 또는 상당 계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휴직자의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휴직기간 중에 당초 휴직 사유와 같은 사유로 휴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로서 휴직기간 연장을 명한 날부터 최종 휴직기간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휴직기간 연장을 명한 날부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휴가 또는 휴직의 시작일부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1. 병가와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2. 출산휴가와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 최근 5년 헌법재판소 휴직·퇴직 현황 >

(단위: 명)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휴직	퇴직	휴직	퇴직	휴직	퇴직	휴직	퇴직	휴직	퇴직
헌법연구관	6	3	8	3	15	1	13	6	12	3
일반직공무원	15	13	20	16	19	22	25	23	26	25

* 휴직은 해당 연도 중 휴직시기가 있는 총 인원

자료: 헌법재판소

□ 또한, 헌법연구관의 비서실장, 공보관 겸임에 따른 인건비 불용액이 2억 5,700만원에 이르는바, 해당 겸임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 예산 편성 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임¹⁴⁾.

- 헌법연구관의 비서실장 겸임과 공보관 겸임은 각각 2007년, 2008년부터 지속되어온 인사 관행인데,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공보관 겸임의 경우 2025년내 보임으로 변경할 예정이며, 비서실장 직위만 헌법연구관 겸임을 통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함¹⁵⁾.

□ 인건비 예산의 경우 직제상 정원 등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에서 관련 지침 등에 따라 편성하고 있는데, 최근 5년 헌법재판소 최소 인건비 불용액인 8억 6,500만원을 기준으로 지속적 불용분을 편성 시

14) 「헌법재판소법」 제19조(헌법연구관) ①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연구관을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업무 외의 직에 임명하거나 그 직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헌법연구관의 수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며, 보수는 그 중 고액의 것을 지급한다.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8조(공보관) ① 공보관은 헌법연구관,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7조(헌법재판소장 비서실 등) ②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은 헌법연구관 또는 1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헌법재판소장의 비서업무와 이에 관련된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5) 공보관의 경우 2025년 7월 보임으로 변경하였음.

일정부분 반영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 헌법재판소의 인건비 예산은 2023년 318억 6,000만원에서 2024년 353억 3,300만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이는 정원의 증가와 공무원보수 증가율 2.84%가 반영된 것임.

□ 헌법재판소의 경우 2024년 전체 세출예산(567억 6,600만원)에서 인건비 예산(335억 3,300만원)이 59.07%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불용액(23억 4,800만원) 대비 인건비 불용액(13억 3,100만원)은 56.67%로, 인건비 예산의 충실한 집행이 더욱 필요해 보임.

□ 인건비는 타 비목으로의 전용이 엄격히 제한되는 예산으로, 불용이 과다할 경우 예산운용의 효율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바, 헌법재판소는 인력에 대한 충원계획을 보다 면밀히 수립하도록 하고, 실제 소요인력이 반영된 적절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인력 운용의 적정성을 기할 필요가 있음.

다.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 관련 제도 개선 필요

- 「국가공무원법」은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¹⁶⁾, 이러한 명예퇴직 제도는 조직의 경우 새로운 인력의 유입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개인의 경우 오랜 공직 생활에서 벗어나 새로운 진로를 모색할 기회를 제공하는 등에 그 목적이 있음.
-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명예퇴직하는 공무원의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경우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건 등을 대통령령 등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¹⁷⁾, 이에 따라 「헌법재

16)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국가공무원이며, 지방공무원의 명예퇴직 관련하여서도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명예퇴직 등)에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명예퇴직 등) ①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勤續)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퇴직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20년 미만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국가기관의 장이 그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가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재임용한 국가기관의 장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1의2. 재직 중에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1의3.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2. 경력직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3. 명예퇴직 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 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받은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여야 하는 국가기관의 장은 환수 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수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과 제2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범위·지급액·지급절차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의 환수액·환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17)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40조 및 제40조의2에도 불구하고 특별승진임용하거나 일반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4.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가 제74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 할 때

② 특별승진의 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판소 공무원 규칙」은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특정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하 “중징계 등의 사실”이하 함)이 없고, 명예퇴직일 전일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할 것을 특별승진의 요건으로 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상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 관련 규정 >

제28조(특별승진임용) ① 법 제40조의4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에는 사무처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 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에는 직무수행능력이 뛰어나 헌법재판소의 발전에 매우 큰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3급 이하 공무원 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에는 제안규정에 따라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5급 이하 공무원 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에는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경우에는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23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일 것.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6개월 단축할 수 있다. 2. 제1항제4호의 경우: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명예퇴직일 전일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일 것. 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마.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5급 및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하거나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제24조·제25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 그런데, 「국가공무원법」상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의 대상인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의 의미가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어,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중징계 등의 사실이 없는 공무원이

명예퇴직하는 경우 재직 중 공적에 대한 고려 없이 특별승진임용이 이루어질 측면이 있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2019년 「공무원의 명예퇴직에 따른 특별승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¹⁸⁾을 통해 명예퇴직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시 특별한 공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특별승진임용된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도 취소하도록 하는 등 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음.
- 국회, 법원, 선거관리위원회도 이후 각각 「국회인사규칙」, 「법원 공무원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을 개정하여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 관련 제도를 개선한 바 있음.
 - 그런데 현행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은 명예퇴직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시 특별한 공적여부에 대한 심사규정 및 명예퇴직 수당이 환수되는 경우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18) 해당 일괄개정 대통령령을 통해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교육공무원임용령」, 「외무공무원임용령」, 「군인사법 시행령」,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음.

「공무원의 명예퇴직에 따른 특별승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의 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지방공무원, 경찰·소방·교육·외무공무원, 군인, 군무원 및 국가정보원 직원의 명예퇴직에 따른 특별승진 등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3급 이하의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지에 대한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해당 공무원이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할 수 없도록 하며, 특별승진임용된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도 취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 등 11개의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다른 국가기관의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 관련 규정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 ① ~ ④ (생략)

⑥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지에 대해 제34조의3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⑦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그 특별승진임용 전의 직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국회인사규칙」

제42조(특별승진임용) ① ~ ④ (생략)

⑤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⑥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그 특별승진임용 전의 직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법원공무원규칙」

제47조(특별승진임용) ① ~ ④ (생략)

⑤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지에 대해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9. 12. 26.>

⑥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그 특별승진임용 전의 직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38조(특별승진임용) ① ~ ④ (생략)

⑤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지에 대해 제39조제2항에 따른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⑥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그 특별승진임용 전의 직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 헌법재판소의 경우 직제상 정원이 352명인 크지 않은 조직으로 연도별 명예퇴직자가 2019년 이후 1~4명에 불과하나, 소규모조직의 경우 명예퇴직에 따른 특별승진 시 온정주의적 요소가 개입할 수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 2019년 이후 헌법재판소의 명예퇴직자는 총 14명인데, 이 중 헌법 연구관 4명을 제외한 10명 중 5명이 특별승진되었고, 특별승진되지 아니한 5명 중 4명은 특별승진 제외사유에 해당함.

< 2019년 이후 헌법재판소 명예퇴직 및 특별승진 현황 >

연도	대상	근속연수	직급	특별승진 여부	특별승진 제외사유 해당여부*
2019년	ㄱㅇㅇ	35년 6월	선임헌법연구관	대상아님	-
	ㄴㅇㅇ	31년 8월	보안서기	×	×
	다ㅇㅇ	31년 4월	법원부이사관	○	-
2020년	ㄱㅇㅇ	20년 1월	선임헌법연구관	대상아님	-
2021년	바ㅇㅇ	25년	기술서기관	○	-
2022년	ㄱㅇㅇ	32년 8월	기계주사	○	-
	ㅇㅇㅇ	30년 10월	속기주사	×	○
	ㅇㅇㅇ	32년 3월	기계주사	×	○
	ㅇㅇㅇ	35년 1월	법원관리관	×	○
2023년	ㄱㅇㅇ	21년 5월	선임헌법연구관	대상아님	-
	ㄱㅇㅇ	25년 6월	법원사무관	○	-
	ㅇㅇㅇ	28년 3월	법원부이사관	×	○
	ㅇㅇㅇ	21년 4월	법원서기관	○	-
2024년	자ㅇㅇ	21년	선임헌법연구관	대상아님	-

* 해당 계급에서 1년 미만 재직, 징계, 상위 직급 정원 없음
 자료: 헌법재판소

-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향후 규칙 개정을 통해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의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추후 명예퇴직금 환수 사유 발생 시 특별승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을 그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운용할 필요가 있음.

2. 본부기본경비(1011-250)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본부기본경비 사업은 헌법재판소 운영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 및 연례·반복적인 운영경비로 2024년 예산액 69억 9,100만원 중 66억 9,7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9,4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4년도 본부기본경비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본부기본경비	6,991	6,991	76 △76	6,991	6,697	—	294	6,955
인건비	800	800	—	800	730	—	71	830
운영비	3,037	3,037	62 △62	3,037	2,913	—	125	3,248
여비	143	143	14 △14	143	140	—	3	177
업무추진비	540	540	—	540	539	—	1	600
직무수행경비	1,764	1,764	—	1,764	1,702	—	62	1,785
보전금	2	2	—	2	—	—	2	2
민간이전	173	173	—	173	143	—	30	177
유형자산	131	131	—	131	130	—	1	135
무형자산	400	400	—	400	400	—	—	—

자료: 헌법재판소

나. 실소요 기반 예산 편성으로 직책수행경비의 집행을 제고 필요

- 기본경비는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 및 연례·반복적으로 소요되는 소규모 운영경비로써, 실·국·과 단위 기관 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여비 등 경상적 경비, 인원·직제 등에 따라 공통적으로 편성되는 직책수행경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4년도 본부기본경비 편성 예산 >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	편성근거
계	6,991	—
인건비	800	계약직 운전원, 구내식당 종사원 등 보수
운영비	3,037	기관 운영 경비, 전산운영경비 등
여비	143	업무상 국·내외 출장 경비
업무추진비	540	자문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지원 경비, 관서운영경비등
직무수행경비	1,764	직책수행경비, 헌법재판활동비 등
보전금	2	증인·감정인 여비, 일당 등
민간이전	173	고용부담금 등 법정부담금
유형자산	131	각종 자산 취득비
무형자산	400	관사 임차보증금

자료: 헌법재판소

- 이러한 본부기본경비 내 직무수행경비의 세목인 ‘직책수행경비(250-02)’는 조직관계법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실·국·과장 등)를 보유한 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헌법재판소는 2024년 기준 예산현액 11억 9,100만원 중 11억 4,600만원을 집행하고, 4,600만원을 불용하였음.

- 특히 최근 5년간 본부기본경비 중 직책수행경비 예산과 그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과 2021년에는 불용액이 크지 않으나, 2022년에는 6,600만원, 2023년에는 5,000만원, 2024년에는 4,600만원의 불용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5년간 본부기본경비 중 직책수행경비 예산 및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내역변경 등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2020	1,044	18	1,062	1,061	1
2021	1,077	29	1,106	1,102	4
2022	1,167	—	1,167	1,101	66
2023	1,191	—	1,191	1,141	50
2024	1,191	—	1,191	1,146	46

자료: 헌법재판소

-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직책수행경비는 월별 지급단가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며, 국장급 이상은 기관장이 직무상 소요를 감안하여 지급 단가의 50% 범위 내에서 균등 또는 차등하여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최근 5년간 직책수행경비의 지급 추이를 살펴보면 집행액에 큰 변화 없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휴직 등의 일부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전년도에 준하는 관례적 예산편성으로 인해 면밀한 소요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향후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예산안 편성 또는 심의 단계에서 직책수행경비의 실소요를 정밀히 파악하여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고, 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3. 국선대리인보수 등(1031-300)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국선대리인보수 등 사업은 헌법소원심판에서 대리인을 선임할 자력이 없는 청구인들에게 충실한 변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재판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참고인으로 지정하여 보다 심도 있는 변론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액 1억 2,700만원 중 1억 1,100만원이 집행되고, 1,6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4년도 국선대리인보수 등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국선대리인 보수 등	127	127	—	127	111	—	16	127
국선대리인보수	109	109	—	109	100	—	9	109
참고인 연구비 등	18	18	—	18	11	—	7	18

자료: 헌법재판소

나. 참고인 연구비 등 사업의 활용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참고인 연구비 등 사업은 재판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참고인으로 지정하여, 변론에서 보다 심도 있는 진술 기회를 제공하고 자 하는 사업으로, 변론에서 참고인의 진술을 직접 청취하여 법적 쟁점 및 실체적 진실파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사업의 목적이 있음.
- 동 사업은 당사자의 참고인 추천에 따라 재판부가 참고인 지정 결정을 하면 참고인이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변론에서의 진술 및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에 대한 참고인 연구비를 지급하는 절차로 운영되고 있음.

< 참고인 연구비 등 사업 집행 절차 >

추진절차	시행주체	관련규정
① 참고인 추천요청 ↓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법」 제30조
② 참고인 지정결정 ↓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법」 제30조
③ 의견서 제출(서면) 및 진술(변론) ↓	참고인	－ 「헌법재판소법」 제30조
④ 참고인연구비 지급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법」 제37조 － 헌법재판소 참고인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제3조 － 헌법재판소 증인 등의 일당과 참고인에 대한 연구비 지급기준에 관한 재판관회의 의결 제3호

자료: 헌법재판소

- 그런데 최근 5년간 참고인 연구비 등 사업의 예산과 그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예산액은 1,800만원으로 6건의 사건에 대해 참고인을 지정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¹⁹⁾, 참고인 지정 건수가 2022년을 제외하고는 2020년 5건, 2021년 2건, 2023년 2건, 2024년 3건에 그쳐 예산 편성 당시 예상된 건수를 하회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 최근 5년간 참고인 연구비 등 사업 예산 및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참고인 지정 사건 수	집행액	불용액(불용률)
2020	18	5건	16	2(11%)
2021	18	2건	6	12(67%)
2022	18	8건	25	△7(△39%)
2023	18	2건	6	12(67%)
2024	18	3건	11	7(39%)

자료: 헌법재판소

- 또한, 최근 5년간 헌법재판소가 개별 사건에서 참고인을 지정하여 의견을 청취한 내역을 살펴보면, 총 20건의 사건에서 총 44명의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하였는바, 전체 참고인 44명 중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법조인이 23명(52.3%)에 달하여 특정 분야로의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고, 전문 분야 참고인 지정 시 전문분야 별로 한 명의 참고인을 지정하여 복수의 전문가 지정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19) 2024년도 참고인 연구비 등 사업 예산 편성 근거

18백만원 = 150만원(평균단가) × 2명(평균참고인수) × 6건(예상건수)

< 최근 5년간 참고인 의견청취 내역 >

변론일자	사 건	참고인	직업
2020. 1. 16.	2017헌마1384, 2018헌마90·145·391 (병합)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등 위헌 확인	장OO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
		한OO	한국전자서명포럼 의장
2020. 5. 14.	2017헌가31 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 항 등 위헌제청	정OO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OO	(사)대한안경사협회 윤리이사
2020. 6. 11.	2017헌가22, 2019헌가8(병합)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 호 본문 위헌제청	김OO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황OO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2020. 9. 10.	2017헌마1113 형법 제307조 제1항 위헌확인	김OO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OO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0. 11. 12.	2018헌바115 민법 제80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현OO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OO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OO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명예교수
2021. 4. 22.	2020헌라3 남양주시와 경기도 간의 권한쟁의	오OO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OO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1. 9. 9.	2020헌가8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위헌제청	제OO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OO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2022. 5. 19.	2021헌마374·743·1043(병합)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김OO	서울특별시 치과의사회 회장
		임OO	대한재활의학과 의사회 부회장
		박OO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서OO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 실장
2022. 6. 16.	2019헌마1399 기획재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일 부 위헌확인	성OO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OO	한국금융위원회 선임연구위원
2022. 7. 12.	2022헌라2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송OO	국회의원
		박OO	국회의원
2022. 7. 14.	2019헌바59 형법 제41조 제1호 등 위헌소원	허OO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OO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OO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론일자	사 건	참고인	직업
2022. 9. 15.	2017헌바42 · 294 · 366 · 431 · 432 · 443, 2017헌가27, 2018헌바116 · 225, 2019헌가6, 2020헌바230(병합)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김OO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OO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2. 9. 27.	2022헌라4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이OO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OO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2. 10. 13.	2020헌가1 · 2021헌가10(병합)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	오OO	한성대학교 국제이주협력학과 교수
		최OO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2. 11. 10.	2019헌가30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 등 위헌 제청	최OO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감염내과
		박OO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23. 1. 12.	2020헌마10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제4항 등 위헌 확인	윤OO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교수
		백OO	책과사회연구소 소장
2023. 5. 17.	2020헌바295 · 2021헌바72(병합) 민법 제1114조 단서 위헌소원	현OO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OO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4. 4. 23.	2020헌마369 · 2021헌마1264 · 2022헌마854 · 2023헌마846(병합)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조OO	전 국립기상과학원장
		안OO	숙명여자대학교 기후환경에너지학과 교수
2024. 5. 21.	2020헌마369 · 2021헌마1264 · 2022헌마854 · 2023헌마846(병합)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박OO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
		유OO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
2024. 12. 10.	2023헌라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	장OO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
		장OO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자료: 헌법재판소

- 그러나 참고인 연구비 등 사업의 추진 목적이 재판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참고인으로 지정하여 변론을 통해 참고인의 진술을 직접 청취함으로써 참고인의 전문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한 의견을 재판부가 참고할 수 있도록 운영하기 위함에 있고, 헌법재판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면 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재판 참고인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 전문가마다 학문적 배경이나 실무 경험, 해석 방식이 다른 점 등을 고려하면 복수의 전문가를 참고인으로 지정함으로써 재판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참고인 지정 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복수로 지정하여 활용하는 등 참고인 연구비 사업의 활용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4. 재판활동운영지원(1031-301)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재판활동운영지원 사업은 헌법재판 처리사건의 양적 증가와 심판대상 다양화 및 전문화 경향에 대응하여 재판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선제적이고 충실한 헌법재판제도의 운영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리구제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재판활동과 관련된 사업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 및 헌법재판소장의 자문기구인 헌법 및 헌법제도 연구위원회 운영 등으로 구성되며,
- 2024년도 예산액 7억 4,800만원 중 7억 3,800만원이 집행되고 1,0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4년도 재판활동운영지원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이·전용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재판활동운영지원	748	748	—	748	738	—	10	671
헌법재판업무지원	247	247	—	247	241	—	6	267
헌법재판 판례심사활동 비 등 운영지원비	221	221	—	221	221	—	—	221
기록물 관리 및 보존	54	54	—	54	53	—	1	143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	10	10	—	10	9	—	1	10
헌법재판소 주요인사 구술총서 발간	30	30	—	30	30	—	—	30
기록물보존서고 RFID 설비 구축	186	186	—	186	185	—	1	—

자료: 헌법재판소

나. 사건처리 지연 문제 해소를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 필요

□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헌법」 제111조제1항²⁰⁾, 「헌법재판소법」 제2조²¹⁾에 따라, ①위헌법률심판(헌가), ②탄핵심판(헌나), ③정당해산심판(헌다), ④권한쟁의심판(헌라), ⑤헌법소원심판(권리구제형:헌마, 위헌심사형:헌바)을 관장하는데,

헌법재판소의 모든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재판부에서 관장함을 원칙으로 하고²²⁾, 다만,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경우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에서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 해당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²³⁾.

20)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21) 「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
2. 탄핵(彈劾)의 심판
3. 정당의 해산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

22) 「헌법재판소법」 제22조(재판부) 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

② 재판부의 재판장은 헌법재판소장이 된다.

23) 「헌법재판소법」 제72조(사전심사) ①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지정재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거나 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

2. 제69조의 청구기간이 지난 후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

3. 제25조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 없이 청구된 경우

4. 그 밖에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④~⑥ (생략)

(1) 헌법심판사건 법정처리기간 초과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38조²⁴⁾에서는 심판사건의 심판기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심판기간에 관한 규정은 「대한민국헌법」 제27조²⁵⁾에 의하여 국민에게 보장된 재판청구권 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아무리 공정하고 적정한 재판이라 하더라도 그 재판의 종결이 지나치게 지연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재판에서 종국적으로 승소하더라도 권리구제의 실효를 거둘 수 없거나 또는 그 의미가 반감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²⁶⁾.

- 그런데 연도별 전원재판부의 심판사건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²⁷⁾, 2024년 기준 평균 처리기간은 약 725일로 법정처리기간인 180일을 훨씬 초과하였으며, 180일 이내 처리한 건수는 78건(9.9%), 180일을 초과한 건수는 712건(90.1%)으로 법정처리기간 준수 비중이 현저히

24) 「헌법재판소법」 제38조(심판기간)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5) 「대한민국헌법」 제27조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6)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7헌마732

27) 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하여 사전심사에서 각하 결정만을 할 수 있으므로 제외하였음(「헌법재판소법」 제72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최근 5년간 전원재판부 처리기간 준수 현황 >

(단위: 건, 일, %)

구분	전원재판부 심판 사건 처리 건수			평균 처리 기간
	계	180일 이내 처리(비중)	180일 초과(비중)	
2020	575	98(17)	477(83)	589.4
2021	561	84(15)	477(85)	611.7
2022	474	59(12.4)	415(87.6)	732.6
2023	721	75(10.4)	646(89.6)	809.2
2024	790	78(9.9)	712(90.1)	724.7

※ 취하사건 포함
자료: 헌법재판소

□ 특히 2024년 기준 전원재판부 심판 사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건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사건(헌마)²⁸⁾으로 2020년 364건에서 2024년 484건으로 1.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법정기간 내 처리 비율은 2020년 21.4%에서 2024년 8%로 감소하고, 법정기간 초과 처리 비율은 2020년 78.6%에서 2024년 9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28)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 최근 5년간 각 사건별 전원재판부의 사건 처리 현황 >

(단위: 건, 일, %)

구분	전원재판부 심판 사건 처리 건수			평균 처리 기간
	계	180일 이내 처리(비중)	180일 초과(비중)	
2020	575	98(17)	477(83)	589.4
	20(헌가)	2(10)	18(90)	611.5
	-(헌나)	-	-	-
	11(헌라)	2(18.2)	9(81.8)	801.1
	364(헌마)	78(21.4)	286(78.6)	524.3
	180(헌바)	16(8.9)	164(91.1)	700.1
2021	561	84(15)	477(85)	611.7
	19(헌가)	-	19	917.3
	1(헌나)	-	1	266
	1(헌라)	-	1	1890
	387(헌마)	76(19.6)	311(80.4)	531.7
	153(헌바)	8(5.2)	145(94.8)	769.9
2022	474	59(12.4)	415(87.6)	732.6
	37(헌가)	14(37.8)	23(62.2)	639
	-(헌나)	-	-	-
	4(헌라)	1(25)	3(75)	542.8
	301(헌마)	42(14)	259(86)	662.7
	132(헌바)	2(1.5)	130(98.5)	924.1
2023	721	75(10.4)	646(89.6)	809.2
	48(헌가)	15(31.2)	33(68.8)	608.7
	1(헌나)	1	-	166
	8(헌라)	1(12.5)	7(87.5)	503.3
	406(헌마)	40(9.9)	366(90.1)	806.4
	258(헌바)	18(7.0)	240(93.0)	863
2024	790	78(9.9)	712(90.1)	724.7
	28(헌가)	-	28	899.3
	2(헌나)	-	2	260
	3(헌라)	1(33)	2(67)	595
	484(헌마)	39(8)	445(92)	732.6
	273(헌바)	38(14)	235(86)	697.4

자료: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사건의 심판기간을 180일로 정한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의 심판기간에 관하여 지침을 제시하는 훈시적 규정이므로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 등 헌법재판을 함에 있어서 심판기간인 180일 이내에 반드시 종국결정을 선고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법정처리기간 조항은 훈시적 규정일 뿐 법률상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결정을 한 바 있음²⁹⁾.
-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을 통해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담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이라는 점에서 법정처리기간 초과 문제를 보다 엄격히 인식할 필요가 있고, 특히 헌법소원심판사건의 처리 기간 지연 문제는 헌법재판을 통해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헌법재판제도의 취지 달성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개선의 노력이 필요함.
- 참고로, 국회는 헌법재판소 심판사건의 처리 기간 지연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제도개선 등 시정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임.

< 최근 5년간 심판사건 처리 관련 국회의 시정요구 내역 >

연도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2020 (2019 회계연도)	법정기간 내 처리비율 제고 필요	사업명	재판활동운영지원(1031-301)	제도개선
		시정요구 사항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연구원 및 재판부 산하의 연구위원회 등과 협업을 통해 법정기간 내 처리비율 제고 등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9)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7헌마732 결정, 헌법재판소 2014. 6. 3. 선고 2014헌마433 결정 등

연도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2021 (2020 회계연도)	심판사건 처리지연에 대한 시정 필요	사업명	재판활동운영지원(1031-301)	시정
		시정요구 사항	헌법재판소의 심판사건 처리지연으로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가 제한되고 있는바,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 처리지연을 해소하고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	
2022 (2021 회계연도)	심판사건 처리지연에 대한 현실적 개선방안 필요	사업명	재판활동운영지원(1031-301)	제도개선
		시정요구 사항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의 처리지연을 해소하고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면서도 남소를 방지하는 대책 등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	
2023 (2022 회계연도)	심판사건 처리기한 준수 및 장기 미처리된 사건의 처리 강화	사업명	재판활동운영지원(1031-301)	제도개선
		시정요구 사항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소원 등 심판사건의 처리기한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접수한 날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사건에 대해서는 종국결정이 신속하게 선고될 수 있도록 심리 지원 역량을 집중하는 등 별도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것	
2024 (2023 회계연도)	헌법재판의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사업명	재판활동운영지원(1031-301)	제도개선
		시정요구 사항	헌법재판소는 헌법연구관으로 구성된 연구부 조직과 인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헌법재판 청구 남발에 대한 실효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심판사건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	

자료: 의안정보시스템, 각 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

-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심판사건 처리기간 지연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처리기간에 있어 유의미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요인을 분석하여 헌법소원 등 심판사건의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2) 장기미제 사건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필요

- 헌법재판소의 심판사건 처리 기간 지연은 장기 미제 사건의 증가로도 나타나고 있는바, 특히 심판사건 접수 후 2년이 경과한 사건이 크게 증가하여 2020년 201건에서 2024년에는 426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음.

< 최근 5년간 전원재판부 처리기간 준수 현황 >

(단위: 건)

구분	계	심리기간			
		180일 이내	180일 경과 1년 이내	1년 경과 2년 이내	2년 경과
2020	1,312	439	332	340	201
2021	1,518	485	320	431	282
2022	1,672	433	269	514	456
2023	1,604	401	294	425	484
2024	1,401	401	238	336	426

자료: 헌법재판소

- 특히, 심판사건이 접수된 이후 2년 이상 경과한 미제 사건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년 경과 3년 이내의 사건이 2020년의 경우 132건에서 2024년 227건(1.7배)으로, 3년 경과 4년 이내의 사건의 경우 2020년 45건에서 2024년 144건(3.2배)으로, 4년 경과 미제 사건의 경우 2020년 24건에서 2024년 55건(2.3배)으로 증가하여 향후 장기미제 사건의 누적적 증가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바,

4년 이상 장기미제 사건의 대부분(55건 중 53건, 96.4%)이 헌법소원사건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청구인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장기미제사건을 별도로 관리하는 등 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최근 5년간 미제사건 현황 >

(단위: 건)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년 경과 3년 이내	132	185	327	319	227
3년 경과 4년 이내	45	56	83	145	144
4년 경과	24	41	46	20	55
합계	201	282	456	484	426

자료: 헌법재판소

< 2024년 4년 경과 미제사건(55건)의 유형별 분류 >

(단위: 건)

구분	위헌법률 (헌가)	탄핵 (헌나)	권한쟁의 (헌라)	제68조제1항 헌법소원(헌마)	제68조제2항 헌법소원(헌바)
건수	2	—	—	30	23

자료: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는 장기미제부(T/F)의 한시적 운영(2023. 2. 12. ~ 2024. 2. 18.), 사전심사부³⁰⁾ 신설(2024. 2. 19.~), 재판관별 부장연구관 배치 등 연구부 조직 개편 등을 통해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임.

30) 「헌법재판소법」 제72조에 따라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하는 헌법연구관으로 구성된 연구부임.

□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사전심사제도(「헌법재판소법」 제72조)³¹⁾의 경우 헌법소원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한 청구인 경우에 한하여 재판관 전원일치로 사건을 종국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등 그 역할과 기능이 제한적인 측면이 있어 사전심사부 운영만으로는 장기미제 사건 대응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법원 또한 고(高) 분쟁성 사건을 선제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장기미제 중점처리 법관을 배치하고, 장기미제 사건을 우선 처리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 점³²⁾ 등을 참고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한 장기미제부를 상설화하거나, 사건의 경중, 난이도,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사건을 선별(신속처리사건, 신중처리사건, 통상사건)하여 배정³³⁾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 심판절차의 효율성과 신속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1) 「헌법재판소법」 제72조(사전심사) ①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지정재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른 구체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거나 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

2. 제69조의 청구기간이 지난 후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

3. 제25조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 없이 청구된 경우

4. 그 밖에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④~⑥ (생략)

32) 법률신문, “‘장기미제 중점 처리 법관’이 장기미제 잡는다...서울중앙지법, 장기미제 사건 감소되나”, 2023년 12월 21일자 기사, 한겨레, “장기미제 해결 나선 법원장 “다른 재판 결과 안 기다린다”, 2024년 3월 18일자 기사 등 참조

33) 2022년도 헌법재판소 연구용역과제(손인혁, “신속한 기본권 구제를 위한 심판업무 개선에 관한 연구”)에서 유사 의견이 제시된 바 있음.

다. 성과지표 목표치를 적극적 업무 수행의 관점에서 설정할 필요

- 헌법재판소는 8개의 단위사업과 13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운영(1001) 프로그램의 목표³⁴⁾인 ‘효율적인 심판사건처리 지원’의 성과지표를 심판사건처리율(처리사건/접수사건×100)로 설정하여 그 성과의 달성도를 측정하고 있음³⁵⁾.

< 2021~2025년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및 최근 4년간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심판사건처리율 (단위: %)	목표	95.0	94.0	94.4	62.9	64.3	최근 3년('22~'24)의 평균처리율 (63.3%)보다 1.0%p 상향된 64.3%로 설정	처리사건/ 접수사건 × 100	헌법재판 정보시스템
	실적	92.7	94.6	102.6	66	—			
	달성도	97.6	100.6	108.7	104.9	—			

※ 목표달성도를 보다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24년부터 측정산식 변경

- '23년 이전 : 처리사건 / 접수사건 × 100, 접수사건 = 본년 접수사건

- '24년 이후 : 처리사건 / 접수사건 × 100, 접수사건 = 본년 접수사건 + 과거연도 미처리 사건

자료: 2024회계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사업설명자료 II-1

34) 2024년도 성과계획서(헌법재판소)

3. 목표 및 과제현황

(단위 : 개수)

전략목표 (Strategic Goal)	프로그램 목표		
		단위사업	세부사업
1	1	8	13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목표(Program Objectives)	
전략목표 I. 적정하고 신속한 결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			
	I-1 헌법재판소운영	효율적인 심판사건처리 지원	

35) 「국가재정법」에 따른 성과관리제도는 재정사업의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지표에 의한 평가결과를 재정운영(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임.

제85조의10(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의 반영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재정사업의 성과목표관리 결과를 종합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사업의 성과평가 결과를 재정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결과를 조직·예산·인사 및 보수체계에 연계·반영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 등이 우수한 중앙관서 또는 공무원에게 표창·포상 등을 할 수 있다.

- 지난 국회의 2021회계연도 결산 및 2023년도 예산안 심사 시 처리사건과 달리 접수사건에 과거연도 미처리 사건이 포함되지 않아 사건처리 성과를 왜곡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2024년도 성과계획서부터 추정산식을 변경하였음.
- 헌법재판소는 2021년까지는 2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으나 ‘1 프로그램 1 지표’를 원칙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하도록 한 변경된 지침에 따라 2022년부터 1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있음³⁶⁾.

□ 헌법재판소는 해당 성과지표의 2025년도 성과계획서상 목표치를 64.3%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2024년도의 실적 66% 대비 1.7%p 하향된 수치임. 헌법재판소의 2025년도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해당 목표치는 최근 3년('22~'24)의 평균처리율(63.3%)보다 1.0%p 상향한 수치를 설정한 것인데³⁷⁾, 국회의 예결산 심사 시 헌법재판소의 사건처리 지연에 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년도 실적보다 하향된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³⁸⁾.

36) 2021년까지는 심판사건처리율, 정보시스템 활용 만족도(정보화) 등 2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음.

37) 2024년도의 경우 최근 3년('21~'23)의 평균처리율보다 0.5% 상향된 수치를 목표치로 설정한 바 있음.

38) 헌법재판소의 2025년도 성과계획서상 설정된 목표치(64.3%)가 전년도 실적(66%)보다 낮게 설정된 이유에 대한 설명

· 사회적 관심이 크고 시급하게 처리되어야 하는 탄핵 및 권한쟁의 사건이 '24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제기되었고 '24년 처리되지 못한 탄핵심판 사건은 전년대비 3배 이상, 권한쟁의심판 사건은 1.6배 이상 증가하였음

- 탄핵심판 및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필수적 변론사건*으로 재판부의 업무부담이 과중한 상황이며, '24. 10월 이후 재판부의 공석도 지속되고 있음
- * 통상 연 6~8회 실시되는 변론이 '25. 2월 말 기준으로 18회 실시됨

· '24년의 목표치 초과 달성은 처리건수의 증가 요인 외에 접수건수의 일시적인 감소 영향도 있으며, '25. 4월 이후 재판부 추가 공석 발생 가능성, 대통령 탄핵과 같은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의 처리 이후 전체 접수건수가 급증한 과거 사례('17년 당시 접수건수 전년대비 35% 급증) 등을 고려해야 함

⇒ 이를 종합하여 고려하였을 때 '25년 목표치는 단순히 전년도 실적치를 기준으로 삼기보다 최근 3년 평균처리율을 감안하여 설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함

- 보수적인 목표치를 설정함에 따라 2022년도와 2023년도 목표 달성도는 각각 100.6%, 108.7%이며, 측정산식이 변경된 2024년도의 경우에도 104.9%로, 최근 3년의 성과 달성도가 모두 100%를 상회함.
- 「헌법재판소법」은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³⁹⁾, 전원재판부 심판사건의 180일 이내 처리 비중은 2022년 12.4%, 2023년 10.4%, 2024년 9.9%에 불과함.

< 최근 10년 연도별 심판사건 처리기간 >

연 도	신규접수	처리사건					미제
		취하(A)	지정부각하(B)	전원부 본안심리 처리(C) (건 / 처리기간)		합계(D)	
2015	1,859	26	1,344	567	535.1(약 1년 6개월)	1,937	746
2016	1,951	61	1,342	573	463.4(약 1년 3개월)	1,976	721
2017	2,626	25	2,031	369	385.8(약 1년 1개월)	2,425	922
2018	2,427	50	1,796	601	609.3(약 1년 8개월)	2,447	902
2019	2,730	46	2,018	455	521.9(약 1년 5개월)	2,519	1,113
2020	3,241	54	2,467	521	640.8(약 1년 9개월)	3,042	1,312
2021	2,827	52	2,060	509	661.6(약 1년 10개월)	2,621	1,518
2022	2,829	39	2,201	435	779.1(약 2년 1개월)	2,675	1,672
2023	2,591	42	1,938	679	835.3(약 2년 3개월)	2,659	1,604
2024	2,522	40	1,935	750	746.8(약 2년 1개월)	2,725	1,401

자료: 헌법재판소

39) 「헌법재판소법」 제38조(심판기간)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2025년도 예산안과 함께 제출되는 성과계획서 총괄편에 따르면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중장기 추진계획, 유사사업·국제수준과의 비교, 과거 추세치 등을 고려하여, 사업방식 개선 의지 등 “적극적 업무 수행의 관점에서 도전적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며⁴⁰⁾, 2024년 심판사건 처리기간이 약 2년 1개월(2015년 약 1년 6개월), 미제사건이 1,401건(2015년 746건)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여 목표치를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짐.

- 점점 증가하는 심판사건 처리기간과 미제사건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목표치의 설정에 따른 실질적 성과 달성을 이룬 것인지 의구심이 있음.

□ 더불어, ‘심판사건처리율’ 자체는 헌법재판소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유효한 성과지표의 하나로 보여지나, 하나의 성과지표만으로 ‘효율적인 심판사건처리 지원’이라는 프로그램 목표의 적절한 성과에 대한 판단을 하기 충분치 않은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는바 추가적인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2025년도 성과계획서 총괄편에 따르면 프로그램 목표가 1~2개인 경우 등 성과지표를 복수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 성격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당 최대 2개까지 성과지표의 설정이 가능함.

40) 2025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p.13

(2)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중장기 추진계획, 유사 사업·국제수준과의 비교, 과거 추세치 등을 고려하여, 사업방식 개선 의지 등 적극적 업무 수행의 관점에서 도전적으로 설정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시 그 측정방법 및 근거 등은 공식적인 자료를 활용하며, 자료 출처 등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성과측정 자료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 예를 들어, ‘헌법재판의 전자접수율’은 국민의 헌법재판 이용편의를 보여줄 수 있는 유용한 지표로 보여지는데⁴¹⁾, 전자접수율은 매년 50% 내외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2024년도의 경우 46.5%로 직전 연도보다 하락한바,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하나로 보여짐.

< 최근 5년 헌법재판 전자접수율 >

(단위: 건, %)

구분	연 도	전체접수	전자접수	전자접수 비율
	2020	3,241	1,661	51.2
	2021	2,827	1,332	47.1
	2022	2,829	1,457	51.5
	2023	2,591	1,328	51.3
	2024	2,522	1,173	46.5

자료: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는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낮게 설정하여 성과 달성도가 100%를 상회하기보다는 적극적 업무수행의 관점에서 목표치를 도전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도달하도록 노력함으로써 효율적인 심판사건처리 지원이라는 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하나의 성과지표만으로 헌법재판소 프로그램의 성과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고민할 필요가 있음.

41) 2024년도 성과계획서(헌법재판소) p.14・15 발췌

1. 프로그램 목표 개요

□ 주요 추진전략

- 신속한 재판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
- 국민과 소통하는 재판・행정 서비스 실현
 - 민원상담 챗봇 운영, 전자헌법재판센터 이용 시 불편사항 개선 등 국민이 심판청구를 보다 쉽게 하도록 헌법재판 이용편의 제고
- 업무효율화를 위한 기반 조성
- 국제교류 활성화

5. 본부운영지원(1032-302)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본부운영지원 사업은 헌법재판소 홍보(공보)활동, 청사관리 등 헌법재판소의 효율적인 운영지원을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46억 2,400만원 중 42억 2,000만원을 집행하고 4억 3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4년도 본부운영지원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본부운영지원	4,624	4,624	—	4,624	4,220	—	403	4,292
홍보(공보)활동	464	464	—	464	439	—	25	289
정책연구용역 등	50	50	—	50	45	—	5	50
차량 임차	126	126	—	126	126	—	—	126
노후 사무집기류 교체 등	53	53	—	53	51	—	1	30
청사보안장비 등 확충	43	43	—	43	44	—	△1	53
조직역량강화 워크숍	45	45	—	45	40	—	5	45
사회복무요원 운영	87	87	—	87	78	—	9	102
사이버어학교육 등	46	46	—	46	45	—	1	40
공무직근로자 보수 등	1,548	1,548	—	1,548	1,481	—	68	1,596
청사관리	270	270	—	270	249	—	21	256
시설 보완공사	1,393	1,393	—	1,393	1,196	—	197	494
헌법재판소 전시관 운영	34	34	—	34	34	—	—	27
도서관 운영 및 관리	35	35	—	35	34	—	1	30
공관 환경개선공사	430	430	—	430	360	—	70	—
청사 환경개선공사	—	—	—	—	—	—	—	1,154

자료: 헌법재판소

나. 어린이 홈페이지 운영사업의 수행 방식 개선 필요

- 어린이 홈페이지 운영 사업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헌법 및 헌법재판 관련 영상·만화·동화·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헌법과 헌법재판제도에 대한 어린이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액 5,000만원 중 4,600만원이 집행되었음.

< 2024년도 어린이 홈페이지 운영사업 예산 및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사업명	세사업명	세세사업명	예산	집행
본부운영지원(1032-302)	홍보(공보) 활동	헌법재판소 어린이 홈페이지 운영	50	46

자료: 헌법재판소

- 동 사업은 전국 초등학생(어린이)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 초등학생이 어린이날(5. 5.), 제헌절(7. 17.), 헌법재판소 창립기념일(9. 1.)에 어린이 홈페이지에 접속해 동영상·만화·동화 등 콘텐츠를 둘러보고 가장 좋았던 콘텐츠 제목을 이벤트 페이지에 제출하면,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가장 많은 학생이 참여한 초등학교를 선정하여 전교생에게 헌법재판소 기념품과 소책자를 제공하는 이벤트가 운영되고 있음.

< 어린이 홈페이지 운영 사업 개요 >

구분	주요 내용
목적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헌법 및 헌법재판 관련 영상·만화·동화·게임 등 다양하고 흥미로운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헌법과 헌법재판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
사업 시행 연혁	2022년부터 현재까지
취지	초등학교 사회교과 수업에서 배우는 헌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을 알림
사업 대상	전국 초등학생(어린이)
사업 방법	어린이 홈페이지 용역업체 선정을 통해 매년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어린이날(5. 5.), 제헌절(7. 17.), 창립기념일(9. 1.)에 맞춰 이벤트를 실시 ※어린이 홈페이지에 접속해 동영상·만화·동화 등 콘텐츠를 둘러보고 가장 좋았던 콘텐츠 제목을 이벤트 페이지에 작성 → 추첨을 통해 당첨자 100명을 선정 → 어린이 홈페이지 알림판·SNS를 통해 당첨자 발표 → 헌법소책자 및 기념품 등 발송

이벤트기간 4월 28일(월) ~ 5월 11일(일)

당첨자발표 5월 16일(금)

이벤트경품 아이스크림 기프트콘(1만 원)

헌법재판소
어린이 홈페이지에 방문해
동영상·만화·동화 등 콘텐츠 중
가장 좋았던 콘텐츠 제목을
알려주세요!

가장 많은 학생이 참여한 학교를 선정하여 전교생에게
헌법재판소 기념품과 헌법소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참여하기 >](#)

자료: 헌법재판소

- 최근 3년간 헌법재판소 어린이 홈페이지 방문 및 이벤트 참여자 현황을 살펴보면, 동 사업이 처음 시행된 2022년의 경우 5월 어린이날 행사기간 참여자 수가 671명, 7월 제헌절 행사기간 참여자 수가 947명으로 1,000여명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2024년의 경우 5월 어린이날 행사기간 참여자 수가 1,568명, 7월 제헌절 행사기간 참여자 수가 3,503명, 9월 창립기념일 행사기간 참여자 수가 741명에 이르러 양적 측면에서는 성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임.

< 최근 3년간 어린이 홈페이지 운영사업 참여 현황 >

(단위:천원)

2022년	구분	5월 어린이날 (5. 2.~5. 15.)	7월 제헌절 (7. 11.~7. 24.)	—
	접속 수	125,118	235,530	—
	참여자 수	671명	947명	—
2023년	구분	5월 어린이날 (5. 1.~5. 14.)	7월 제헌절 (7. 3.~7. 23.)	9월 창립기념일 (8. 28.~9. 17.)
	접속 수	77,656	179,459	44,488
	참여자 수	1,065명	1,499명	989명
2024년	구분	5월 어린이날 (4. 29.~5. 12.)	7월 제헌절 (7. 8.~7. 21.)	9월 창립기념일 (8. 26.~9. 8.)
	접속 수	75,213	313,686	32,958
	참여자 수	1,568명	3,503명	741명

자료: 헌법재판소

- 그런데 최근 3년간 헌법재판소 어린이 홈페이지 방문 관련 월별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2022년의 경우 방문건수 가장 많은 달인 7월

(353,731건)과 가장 적은 달인 2월(8,671건) 사이에 약 40배의 차이를 보였고, 2024년의 경우도 방문건수가 가장 많은 달인 7월(518,386건)과 가장 적은 달인 2월(30,330건) 사이에 약 17배의 차이를 보여 이벤트를 개최한 달(5월, 7월, 9월)과 그 외의 달의 방문건수에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3년간 어린이 홈페이지 월별 방문 현황 >

연도	월	페이지뷰(PV)	합계
2022년	1월	9,650	1,014,024
	2월	8,671	
	3월	17,374	
	4월	41,169	
	5월	168,744	
	6월	167,355	
	7월	353,731	
	8월	21,536	
	9월	121,860	
	10월	31,474	
	11월	39,818	
	12월	32,642	
2023년	1월	26,718	1,058,506
	2월	23,707	
	3월	43,161	
	4월	79,461	
	5월	140,231	
	6월	351,868	
	7월	194,536	
	8월	39,303	
	9월	54,473	
	10월	40,549	
	11월	32,265	
	12월	32,234	
2024년	1월	32,346	1,587,957
	2월	30,330	
	3월	50,989	

	4월	135,908	
	5월	144,841	
	6월	411,708	
	7월	518,386	
	8월	54,439	
	9월	54,380	
	10월	48,655	
	11월	44,228	
	12월	61,747	

자료: 헌법재판소

-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동 사업의 목적이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정보 제공을 통해 어린이의 헌법과 헌법재판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하고자 함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특정 이벤트 기간 외에도 사업대상자의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운영 방식을 강구하고, 실효성 있는 참여 유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 정책연구용역 사업의 수의계약 최소화 및 연구수행기관의 다변화 방안 마련 필요

- 정책연구용역 등 사업은 헌법재판 발전 및 재판소 정책개발을 위하여 심층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외부 전문 연구진에 의뢰하여 조사·연구하는 사업으로, 연구자와 연구 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형태로 이루어짐.
- 헌법재판소가 최근 5년간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한 사업의 예산 및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과 2022년의 경우 4,500만원의 예산 중 4,100만원을 집행하여 4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2023년과 2024년의 경우 5,000만원의 예산 중 4,500만원을 집행하여 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 최근 5년간 정책연구용역 등 사업 예산 및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2020	50	50	0
2021	45	41	4
2022	45	41	4
2023	50	45	5
2024	50	45	5

자료: 헌법재판소

-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최근 5년간 수행한 정책연구용역 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수행한 정책연구용역 수행 사업 7건 중 4건(57%)은 수의계약으로, 나머지 3건(43%)은 제한경쟁으로

수행하였고, 7건의 연구 중 4건은 한국헌법학회가, 2건은 한국공법학회가 수행하여 특정 학회와의 계약 비중이 높고, 수의계약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최근 5년간 정책연구용역 과제 현황 >

연도	과제명	계약액	집행액	계약기간	수행기관 (수행자)	계약방법	사유
2020	AACC 및 연구사무국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	25	25	2020.4. ~ 2020.10.	한국헌법 판례연구학회 (손00)	수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제1 항제2호
	비교법적 접근을 통한 장애 개념의 헌법적 이해	25	25	2020.6. ~ 2020.10.	한국헌법학회 (권00)	수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2021	헌법재판연구원의 연구 및 교육기능 강화방안	18	18	2021.6. ~ 2021.10.	한국헌법학회 (이00)	수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사회변화에 따른 가족관계의 변화와 헌법재판-부양, 양육, 상속 등을 중심으로-	23	23	2021.6. ~ 2021.10.	한국공법학회 (신00)	수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2022	신속한 기본권 구제를 위한 심판업무 개선에 관한 연구	41	41	2022. 7. ~ 2022. 10.	한국헌법학회 (전00)	제한 경쟁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 가목
2023	헌법재판과 사실인정-헌법재판소 조사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45	45	2023. 6. ~ 2023. 10.	한국공법학회 (김00)	제한 경쟁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 가목

연도	과제명	계약액	집행액	계약기간	수행기관 (수행자)	계약방법	사유
2024	헌법재판에서의 사법접근성 강화	45	45	2024. 6. ~ 2024. 10.	한국헌법학회 (권00)	제한 경쟁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 가목

자료: 헌법재판소

□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정책연구용역 사업은 입찰공고를 통하여 경쟁입찰을 진행하였으나, 관련 규정에 따라 단독입찰 등으로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고⁴²⁾, 용역계약 금액이 5,000만원 미만으로 소액에 해당하여 제한경쟁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였다고 설명함⁴³⁾.

4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4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①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체결하여야 하는 조달계약(이하 “우선조달계약”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이라 한다)을 통해 중소기업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 추정가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억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보는 법인 또는 단체 중 중소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라 한다)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법 제2조제1호나목의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조의3에서 같다)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가.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3인 이하임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입찰에 참가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2인 미만이거나 2인 이상이라도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流札)된 경

□ 그러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⁴⁴⁾ 및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⁴⁵⁾에 따르면 연구용역 계약 체결 시 일반경쟁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수의계약 또는 제한경쟁입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전문성 있는 연구자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연구기관간 경쟁을 거쳐 수행기관을 선정함으로써 특정 연구기관과의 편중 현상을 방지하기 위함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향후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함에 있어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하여 수의계약 비중을 낮춰 경쟁입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정책연구용역 사업 수행기관 선정을 다변화하여 업무 수행 과정에 다양한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운영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2에 따른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계약에 대해 비영리법인의 경쟁입찰 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

4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45)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연구용역비 집행기준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통한 정책 연구과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만 추진하되,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라. 전기차 충전기 이설공사: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정확성 제고 필요

- 헌법재판소는 2024년도에 전기차 충전기 관련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해당 공사를 통해 기존 별관 지하 3층에 설치되어 있던 전기차 충전기 2대 중 완속 충전기 1대를 본관 지하 1층으로 이설하고, 추가로 4대의 완속 충전기를 본관 지하 1층에 설치하였음.

< 전기차 충전기 이설 관련 사진 >

구분	이설 완속 충전기	신규 완속 충전기
사진		
설치위치	본관 지하1층 주차장 출입구 옆	본관 지하1층 주차장 출입구 옆
설치년도	2022	2024
규격	완속 7kW (벽부형)	완속 7kW (자립형)

-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전기공사, 도장공사, 완속 충전기 4대 구매 등으로 공사비(420-03) 세목에서 4,198만원이 집행됨⁴⁶⁾.

46) · 공사계약: 2024. 10. 22.

· 공 사: 2024. 11. 16. ~ 2024. 12. 5.

· 예산집행: 2024. 12. 4.(바닥 도장공사), 2024. 12. 10.(완속 충전기 4대 구매 등)

< 전기차 충전기 이설 관련 사업 집행내역 >

(단위: 천원)

사업명	내역사업	구분	집행액
본부운영지원 (1032-302)	시설 보완공사	전기공사	19,952
		관급자재(완속 충전기 4대) 구매	11,880
		관급자재(볼라드, 스틸패드 등) 구매	6,710
	공사비 (420-03)	바닥 도장공사	3,443
		합 계	41,985

자료: 헌법재판소

□ 하지만, 당초 해당 예산은 별관 지하 3층에 설치되어 있던 전기차 충전기 2대의 지상 또는 지하 1층 이설을 위하여 편성된 것으로, 전기차 충전기 4대의 신규 설치에 예산 편성 당시 계획되지 아니하였음⁴⁷⁾.

- 헌법재판소는 전기차 화재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지하 3층에 설치된 충전기를 지상 또는 지하 1층으로 이설하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예산을 편성하였음⁴⁸⁾⁴⁹⁾.

47) < 헌법재판소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 명세서 >

[단위 : 천원, 1\$]

2024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420-03]공사비		1,746,000	
1. 시설 보완공사		1,334,000	
가. 터보냉동기 교체공사	991,000,000원=	991,000	
나. 전기차 충전기 이설공사	44,000,000원=	44,000	
다. 본관 외벽 보수공사	154,000,000원=	154,000	
라. 대강당 음향설비 교체공사	100,000,000원=	100,000	
마. 파고라 교체공사	45,000,000원=	45,000	
2. 공관 환경개선공사	412,000,000원=	412,000	

48) “전기차 충전기 10%는 ‘지하 2층’보다 아래에 설치돼”, 연합뉴스, 2024. 9. 11.

49)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3094호) [별표 9] 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지침 중: 전기자동차 충전소는 지상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하에 설치할 경우 옥외에서 주차장으로 직접 진입 가능한 램프가 있는 주차장의 최상층에 설치하고, 설치대수가 부족할 경우 바로 아래층에 설치할 수 있다.

- 해당 예산은 전기차 화재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편성된바, 빠른 집행이 이루어졌어야할 것으로 보이나 12월에 공사가 완료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직원 및 방문객의 전기차 운행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헌법재판소 공용차량을 점진적으로 전기차로 교체 예정인 점⁵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⁵¹⁾의 의견도 감안하여 완속 충전기 1대만을 이설하고 4대를 신규로 설치하였다고 설명함.

- 해당 검토보고서는 국내 전기차 침투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현실과 정부의 공공기관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정책을 고려하여 최근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 시설을 이설하기보다는 증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나, 이는 예산에 반영되지 아니함.

□ 그러나, 예산에 편성되지 아니한 사업을 기관이 임의로 수행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제약하고, 해당 사업의 예산이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지양할 필요가 있음.

- 예산 편성 시 목적에 따라 이설되었어야 할 2020년에 설치된 급속 충전기 1대는 여전히 별관 지하 3층에 위치하고 있음.

50) 헌법재판소의 공용차량은 총 21대이며, 이 중 현재 전기차량은 1대이나, 올해 9월 중 추가로 1대를 전기차로 교체할 예정임.

51)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운영,법사,정무) p.120 본부운영지원 사업: 전기차 충전기 이설의 신중한 예산편성 필요

- 전기차 충전기 4대의 신규 설치는 예산안에 편성되어 그 필요성에 대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했음.
- 헌법재판소는 향후 사업목적에 맞게 예산안을 편성하고, 확정된 예산을 편성목적에 맞게 집행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6. 헌법재판연구원운영지원(1033-303)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헌법재판연구원운영지원 사업은 헌법재판연구, 헌법재판 관련 학술·세미나·헌법재판 경연대회·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개최, 정보자료실 운영, 해외 헌법재판기관 초청 연수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4년 예산액 18억 7,800만원 중 18억 6,400만원을 집행하고 1,3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4년도 헌법재판연구원운영지원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헌법재판연구원 운영지원	1,878	1,878	—	1,878	1,864	—	13	1,865
헌법재판연구활동	137	137	—	137	123	—	14	146
헌법 및 헌법재판 관련 학술세미나 개최	16	16	—	16	18	—	△2	16
헌법재판 국제 학술세미나 개최	72	72	—	72	73	—	△1	72
헌법재판 경연대회 개최	43	43	—	43	44	—	△2	43
헌법재판연구원 청사 임차	1,488	1,488	—	1,488	1,488	—	—	1,488
정보자료실 운영	55	55	—	55	55	—	—	55
해외 헌법재판기관 초청연수	21	21	—	21	18	—	3	21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개최	19	19	—	19	20	—	△1	19
헌법재판연구원 청사 보안	5	5	—	5	4	—	1	5
사이버 강좌 재개발	22	22	—	22	21	—	1	—

자료: 헌법재판소

나. 국외통신원 운영 사업의 활성화 방안 등 마련 필요

- 국외통신원 운영 사업은 헌법재판연구원의 연구업무 효율성 등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외에 거주하며 법률관련 분야에 종사하거나 법학을 전공한 사람 중 국외통신원을 위촉하여 국외의 헌법, 헌법재판 관련 최신 소식 등을 소개하는 사업임.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외통신원 사업은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국외통신원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모집 공고를 통해 지원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 전형 등 일정 심사를 거친 후 1년 단위로 위촉(활동결과에 따라 재위촉 가능)하고 있으며,

위촉된 국외통신원은 정기적으로 국외거주국 또는 거주지 헌법재판기관의 최근 판례 동향을 조사하는 기본직무와 헌법재판연구원에서 요구하는 주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수시직무를 수행하게 됨⁵²⁾.

< 헌법재판연구원 국외통신원 제도 개요 >

목적	헌법재판연구원의 연구업무 효율성 등을 도모
운영국가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스페인, 러시아, 중국, 오스트리아 등 국외통신원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는 국가
자격요건	국외 현지에 거주하며 법률관련 분야에 종사하거나 법학을 전공한 사람 *국외 현지 사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자격요건 완화 가능

52) 「헌법재판연구원 국외통신원제도 운영 지침」

모집절차 등	- (모집 공고) 모집 공고문을 작성하여 헌법재판연구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헌법재판연구원 홈페이지 등에 게시 - (서류전형) 심사위원은 제출서류를 참고하여 지원자의 직무 적합성 등을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전화인터뷰 가능 - (합격자 발표) 헌법재판연구원 홈페이지에 합격자 명단을 게시하거나 합격자에게 개별 통보
위촉 및 해촉	- 1년 단위로 위촉하며, 국외통신원의 활동결과에 따라 재위촉 가능 - 국외통신원의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 국외통신원으로서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위촉기간 중 해촉 가능
국외통신원 직무	- (기본직무: 정기적으로 수행) 국외 거주국 또는 거주지 헌법재판기관의 최근 판례 동향 조사 - (수시직무: 헌법재판연구원에서 요구하는 경우 수행) 국외 거주국 또는 거주지 헌법·헌법재판연구 관련 자료 조사, 국제교류·협력, 국제학술대회, 국외출장 관련 현지 지원
직무수당	- (기본직무) 보고서 1건당 30만원 ※ A4 2장 이상 분량의 보고서 의무 제출 - (수시직무) 보고서 1건당 20만원~40만원(보고서 내용, 분량, 제출기한 준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가등급 40만원, 나등급 30만원, 다등급 20만원으로 구분하여 지급) - (상한액) 기본직무와 수시직무 수당 총액이 1인당 월 1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자료: 헌법재판소

- 국외통신원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 첫째, 최근 3년간 국외통신원 운영 사업의 예산과 그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바, 국외통신원에 대한 활용도가 낮은 측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활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국외통신원 운영 사업에 대한 예산액은 각 360만원으로, 12건의 보고서 작성 등을 전제로 건당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⁵³⁾,

실제 보고서 작성 건수는 2022년 7건, 2023년 10건, 2024년 6건에 그쳐 예산 편성 당시 예상된 건수를 하회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 최근 3년간 국외통신원 운영 사업 예산 및 집행 현황 >

(단위: 천원)

연도	예산 편성	집행 건수	집행액	불용액(불용률)
2022	300 × 12건 = 3,600	7건	2,100	1,500(41.6%)
2023	300 × 12건 = 3,600	10건	3,000	600(16.7%)
2024	300 × 12건 = 3,600	6건	1,800	1,800(50.0%)

자료: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연구원 국외통신원 운영지침」에 따르면 국외통신원의 직무는 국외 거주국 또는 거주지 헌법재판기관의 최근 판례 동향을 조사하는 기본직무와 헌법재판연구원에서 요구하는 조사 등을 실시하는 수시직무로 나뉘어 지는데,

헌법재판연구원은 국외통신원을 통해 기본직무 수행에 따른 정기 보고서를 제출받아 헌법연구원이 발간하는 보고서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으나, 2011년 이후 2024년까지 수시직무를 요청한 사례는 한 차례도 없었음.

53) 2024년도 국외통신원 운영 사업 예산 편성 근거
3,600천원 = 300천원 × 12건

- 동 사업의 집행률이 지속적으로 저조한 상황이고, 국외통신원 운영 사업의 목적이 헌법재판연구원의 연구업무 효율성 등을 도모하기 위함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국외통신원의 기본직무 활용 외에도 헌법재판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과제와 관련된 주제에 대한 수시직무 요청 등을 통해 국외통신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둘째, 국외통신원의 지원을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최근 5년간 국외통신원 선정 및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헌법재판연구원의 모집 공고에 따른 재위촉 지원자를 제외한 신규 지원자가 9기(2020.9.~2021.9.) 4명, 10기(2021.9.~2022.9.) 1명, 11기(2022.9.~2023.9.) 2명, 12기(2023.9.~2024.9.) 2명, 13기(2024.9.~2025.9.) 2명에 불과하며, 현재 활동 중인 13기 국외통신원의 경우 2명 지원에 2명이 신규 위촉됨에 따라 지원자가 전원 위촉(경쟁률 1:1)된 상황임.
- 또한, 전체 31건의 국외통신원 위촉 건수 중 신규 위촉은 6건(19%)에 그치고, 대부분 3년 이상의 기존 국외통신원을 재위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현재 활동 중인 13기 국외통신원 중에서는 재위촉을 통해 7년간 해당 국가의 국외통신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헌법재판연구원 국외통신원 운영 현황 >

기수	활동기간	명단	지역	최초 선정일 (신규, 재위촉 여부)
9기	2020. 9. ~ 2021. 9.	한○○	독일	2017. 9.(재위촉)
		정○○	독일	2018. 9.(재위촉)
		조○○	독일	2020. 9.(신규)
		서○○	미국	2020. 9.(신규)
		김○○	멕시코	2014. 9.(재위촉)
		문○○	중국	2015. 9.(재위촉)
		심○○	프랑스	2019. 9.(재위촉)
		김○○	프랑스	2019. 9.(재위촉)
		서○○	일본	2019. 9.(재위촉)
10기	2021. 9. ~ 2022. 9.	정○○	독일	2018. 9.(재위촉)
		조○○	독일	2020. 9.(재위촉)
		서○○	미국	2020. 9.(재위촉)
		김○○	멕시코	2014. 9.(재위촉)
		김○○	프랑스	2019. 9.(재위촉)
		서○○	일본	2019. 9.(재위촉)
11기	2022. 9. ~ 2023. 9.	정○○	독일	2018. 9.(재위촉)
		조○○	독일	2020. 9.(재위촉)
		서○○	미국	2020. 9.(재위촉)
		김○○	프랑스	2019. 9.(재위촉)
		서○○	일본	2019. 9.(재위촉)
		이○○	프랑스·벨기에	2022. 9.(신규)
12기	2023. 9. ~ 2024. 9.	정○○	독일	2018. 9.(재위촉)
		서○○	미국	2020. 9.(재위촉)
		서○○	일본	2019. 9.(재위촉)
		이○○	프랑스·벨기에	2022. 9.(재위촉)
		김○○	독일	2023. 9.(신규)
13기	2024. 9. ~ 2025. 9.	정○○	독일	2018. 9.(재위촉)
		이○○	프랑스·벨기에	2022. 9.(재위촉)
		김○○	독일	2023. 9.(재위촉)
		김○○	영국	2024. 9.(신규)
		이○○	미국	2024. 9.(신규)

자료: 헌법재판소

- 따라서 헌법재판연구원은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외통신원의 지원을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직무 수행에 적합한 양질의 국외통신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다. 특근매식비의 과다편성으로 인한 연례적 집행 부진

- 특근매식비는 정규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7,000원(1인 1식 기준)의 단가를 기준으로 편성하는데⁵⁴⁾,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 소속 직원(20명 내외)의 월 평균 6회 초과근무를 기준으로 최근 5년간 각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 그런데 최근 3년간 헌법재판연구원운영지원사업 중 특근매식비의 예산 및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의 경우 불용액이 793만 4,000원으로 불용률이 79.3%, 2023년의 경우 불용액이 545만원으로 불용률이 54.5%, 2024년의 경우 불용액이 653만 3,000원으로 불용률이 65.3%에 이르러 연례적으로 50%가 넘는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3년간 헌법재판연구원운영지원사업 중 특근매식비 집행 현황 >

(단위: 천원)

연도	예산편성*	실집행액** (집행건수)	이월액	불용액(불용률)
2022	10,000	2,066 (216건)	—	7,934(79.3%)
2023	10,000	4,550 (475건)	—	5,450(54.5%)
2024	10,000	3,467 (384건)	—	6,533(65.3%)

자료: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 소속 직원(20명 내외)의 월 평균 6회 초과근무 기준으로 편성

** 디브레인 시스템상 결제건수

54) 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83면.

- 특근매식비의 성격상 매년 집행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최근 3년간 50%를 넘는 불용률이 발생한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특근매식비의 집행실적을 반영하여 예산의 과다 편성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전년도에 준한 관례적 예산편성이 아닌, 실소요를 감안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7. 해외연수(1034-304)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해외연수 사업은 헌법연구관 및 헌법재판소 직원에게 외국 법제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제공하여 직무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1년 내지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하고 그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액 5억 600만원 중 4억 9,400만원이 집행되고 1,2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4년도 해외연수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해외연수	506	506	—	506	494	—	12	565
헌법연구관 장기해외연수	287	287	—	287	280	—	7	287
일반직 장기해외연수	144	144	—	144	132	—	11	116
헌법연구관 전문화연수	27	27	—	27	32	—	△4	27
연임 헌법연구관 연수	31	31	—	31	29	—	2	31
실무공무원 단기국외훈련	17	17	—	17	21	—	△4	17
KDI 국제정책대학원 국제연수 과정	—	—	—	—	—	—	—	87

자료: 헌법재판소

나. 연임 헌법연구관 연수에 대한 관리 필요

- 해외연수 사업의 내역사업인 “연임 헌법연구관 연수” 사업은 헌법연구관 경력 11년차, 21년차 등 해당 연도에 재임용된⁵⁵⁾ 헌법연구관을 대상으로 외국의 헌법재판기관, 교육기관 등을 방문하여 연구활동 또는 교육훈련에 참가하거나 관련 제도 등을 시찰하는 기회를 제공하고⁵⁶⁾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임.
- 연임 헌법연구관 연수 사업은 국외교육여비(220-03)로만 편성되어 있으며, 2024년 예산현액 3,100만원 중 2,900만원을 집행하고 200만 원을 불용하였음.

< 2024년도 연임 헌법연구관 연수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2025년
	예산액	세목간 조정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예산액
연임 헌법연구관 연수	31	—	31	29	2	31
국외교육여비(220-03)	31	—	31	29	2	31

자료: 헌법재판소

- 해당 사업은 2주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상 연임 헌법연구관이

55) 「헌법재판소법」 제19조(헌법연구관) ⑦ 헌법연구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 60세로 한다.

56) 「연임 헌법연구관의 연수에 관한 내규」 제5조(연수허가) ① 헌법재판소장은 연임하는 헌법연구관이 2주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국의 헌법재판기관, 교육기관 등을 방문하여 연구활동 또는 교육훈련에 참가하거나 관련 제도 등을 시찰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장은 국제회의 참가와 연계하여 해외연수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별적으로 해외연수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석부장연구관(헌법재판연구원 소속인 경우 헌법재판연구원장)에게 보고한 후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헌법재판소장의 허가를 받아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최근 3년 해당 사업을 통해 15명의 헌법연구관이 해외로 연수를 다녀왔음.

연도	성명	연수국가	연수기간	연수목적	결과보고서 제출여부	기한내 제출여부
2022	ㄱ○○	영국	6. 24. ~ 7. 3.	영국 대법원의 구성·권한과 스코틀랜드 대법원과의 관계, 스코틀랜드 자치입법에 대한 사법심사 등에 관한 조사	○	○
	ㄴ○○	싱가포르	7. 25. ~ 8. 3.	싱가포르의 정치제도 및 사법기관의 지위 및 역할 연구	○	○
	ㄷ○○	이탈리아	9. 15. ~ 9. 24.	이탈리아 헌법재판제도 등에 대한 심화 연구	○	기한: 10. 23. 제출: 11. 10.
	ㅇ○○	영국	10. 8. ~ 10. 16.	영국의 사법심사의 최근 동향 조사	○	기한: 11. 15. 제출: 11. 18.
	ㅂ○○	태국	'22. 12. 25. ~ '23. 1. 2.	태국의 헌법재판소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 태국에서 동성혼 등 관련 헌법적 이슈 조사	○	○
2023	ㄱ○○	일본	9. 27. ~ 10. 4.	일본 최고재판소 및 헌법재판제도 조사, 연구	○	○
	ㄴ○○	프랑스	8. 5. ~ 8. 14.	프랑스 주요 헌법기관 방문을 통한 프랑스 사법제도 전반 및 헌법재판제도 조사	○	○
	ㄷ○○	미국	7. 22. ~ 7. 31.	샌디에고 법원, 배심정 등 방문을 통한 사법제도 전반 시찰 및 법학도서관, 로스쿨 등 방문을 통한 자료 조사	○	기한: 8. 30. 제출: 8. 31.
	ㄹ○○	호주	11. 1. ~ 11. 10.	호주 연방헌법, 주 대법원 및 지방법원의 구성, 기능에 관한 조사	○	○
	ㄱ○○	미국	9. 23. ~ 10. 2.	미국의 적극적 우대조치 등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과 관련된 헌법적 쟁점의 심화 연구	○	○

연도	성명	연수국가	연수기간	연수목적	결과보고서 제출여부	기한내 제출여부
2024	ㅂ○○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8. 19. ~ 8. 28.	유럽연합의 구속력 있는 법령의 이행절차, 침해소송(infringement proceedings) 이해	○	○
	ㄴ○○	스위스	6. 12. ~ 6. 21.	스위스 연방제도 및 연방사법제도, 연방의회의 구성과 기능 등에 관한 조사	○	○
	ㅇ○○	미국	9. 23. ~ 10. 2.	유엔인권이사회,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등의 구성과 활동 및 국제사회의 인권보호·증진 현황에 관한 조사	○	○
	ㅈ○○	태국	10. 25. ~ 11. 3.	태국의 헌법재판제도 및 사법제도 연구	○	○
	ㅇ○○	일본	'24. 12. 31. ~ '25. 1. 9.	일본의 사법제도, 의회와 사법제도의 구성과 기능 및 활동 등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기한: 2. 8. 제출: 2. 10.

□ 해당 사업은 10년 동안 근무한 헌법연구관에게 연구활동 또는 교육 훈련에 참가하거나, 관련 제도 등을 시찰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에게 폭넓은 안목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업무를 떠나 새로운 전환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서 이후 10년 동안의 임기에 헌법재판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연수가 끝난 이후에 작성이 이루어지는 해외연수보고서를 통해 연수목적과 연수결과가 부합하는지 등에 관하여 적절한 사후 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⁵⁷⁾.

57) 「연임 헌법연구관의 연수에 관한 내규」 제9조(보고서 제출) ① 연수자는 귀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해외연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석부장연구관에게 보고한 후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외연수보고서는 해외연수계획서상의 연수목적·연수일정 등과 연수결과가 부합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연수 세부내용, 시사점, 연수효과 등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③ 수석부장연구관은 해외연수보고서의 내용이 충실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수자에게 해외연

□ 최근 3년 동안 동 사업의 해외연수보고서(총 15건)를 살펴보면 해당 국가의 연수목적에 따른 제도 설명이 대부분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으나 해당 부분은 논문 등을 통하여도 국내에서 충분히 작성가능한 부분으로 보임.

- 가장 최근인 '24. 12. 31. ~ '25. 1. 9. 일본을 다녀온 해외연수보고서를 살펴보면 ①연수개요(p.1~2), ②연수 세부내용(p.2~21, 일본의 사법 체계, 일본 헌법재판제도, 일본의 최고재판소 재판관 국민심사제, 동성혼에 대한 하급심 법원 위헌판결과 후속조치로 구성), ③시사점 및 연수효과(p.22), ④수집자료 및 참고자료(p.23), ⑤촬영 사진 등(p.24~25)으로 작성되어졌음.

- 연임 헌법연구관의 해외연수보고서는 헌법재판정보시스템에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 해당 시스템은 내부에서 사용하는 업무포털로 외부에는 공개되지 아니하나, 헌법재판소는 정보공개 요청 시 해당 해외연수보고서를 공개한다고 설명하고 있음⁵⁸⁾.

□ 해외연수보고서는 국내에서의 조사가 어려운 해외제도연구, 관계기관 담당자 면담 등 실제 연수 내용이 주축을 이룰 필요가 있음.

- 해당 연수는 외국의 헌법재판기관, 교육기관 등 관련 제도 등을 시찰하는 목적으로도 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해당 연수의 대부

수보고서의 보완 등을 지시할 수 있다.

58) 「연임 헌법연구관의 연수에 관한 내규」 제10조(사후관리) 제9조에 따라 제출받은 해외연수보고서는 헌법재판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분이 기관에 대한 시찰로 보이므로 시찰 내용의 충실한 기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내규에 따르면 연임 헌법연구관 연수는 외국의 헌법재판기관, 교육기관 등을 방문하여 연구활동 또는 교육훈련에 참가할 수 있으나, 시찰의 목적으로만 운영되어지고 있음.

□ 한편, 해당 연수보고서는 연수자가 귀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석부장연구관에게 보고한 후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연수보고서는 대부분 기간 내에 제출되어지고 있으며 일부 기간을 지나 제출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이 비교적 짧음.

□ 다만,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법원의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해외연수 등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연임법관연수를 실시한 연수자는 연수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연수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했던 비용의 일부를 환수하도록 규정하여 내규로 결과보고서 제출의 적시성을 담보하고 있는바, 헌법재판소 내규에도 이러한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⁵⁹⁾.

59)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해외연수 등에 관한 내규」 제40조 (연임법관연수) ① 법원행정처장은 연임한 법관에게 연수(이하 '연임법관연수'라 한다)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예산, 해외연수 기회 부여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연임법관연수 대상자 중 국비 해외 연임법관연수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연임법관연수를 실시한 연수자(자비로 연임법관연수를 실시한 자를 포함한다)는 연수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에게 연수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수자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에서 정한 연수결과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을 희망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사유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30일의 범위

- 헌법재판소는 연임 헌법연구관의 연수에 있어서, 해당 사업이 그 목적 및 내규상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고, 해외연수보고서에 대한 내규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에서 연수결과보고서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연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등 연임법관 연수에 소요된 경비(보수는 제외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

1.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 ⑥ 제5항에 따른 반납의무자는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8. 국제교류(1034-305)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국제교류 사업은 베니스위원회, 세계헌법재판회의, 외국 헌법재판소 주최 국제세미나, AACC(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정례회의 등을 참석하고, 주요 헌법재판기관 등 세미나 개최, AACC 연구사무국 운영, AACC 연구 컨퍼런스 개최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4년 예산현액 5억 8,700만원 중 5억 1,700만원을 집행하고 7,0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4년도 국제교류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국제교류	587	587	8 △8	587	517	—	70	614
베니스위원회 참석	74	74	—	74	70	—	4	74
세계헌법재판회의 등 참석	30	30	—	30	3	—	27	79
외국 헌법재판소 주최 국제세미나 등 참석	55	55	—	55	40	—	16	55
주요 헌법재판기관 등 세미나 개최	42	42		42	42	—	△1	42
AACC 정례회의 등 참석	42	42	—	42	31	—	11	24
AACC 연구사무국 운영	121	121	8	129	127	—	1	117
AACC 연구 컨퍼런스	186	186	—	186	177	—	9	186
AACC 연구사무국 연구·조사	37	37	△8	30	26	—	3	37

자료: 헌법재판소

나. 연례적 세목조정 지양 필요

- 국제교류 사업의 내역사업인 ‘AACC⁶⁰⁾ 연구사무국 운영’ 사업은 연구사무국의 연구·조사, 파견제도, 국제회의 개최 등 핵심 사업의 지원 및 내실 있는 사무실 운영을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1억 2,900만원 중 1억 2,700만원이 집행되었음.

<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 개요 >

□ 조직현황

- 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 15층
- 면적: 433m², 130평
- 임차료: 서울특별시와의 MOU 체결을 통해 무상지원
- 인력구성: AACC지원과 직원, 국내외 파견자 등 15명

- (연혁) 2016. 8월 AACC 이사회 결정에 따라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는 3개 상설사무국 설립 (연구사무국은 2017. 1월 출범)

※ AACC 상설사무국 현황(3개 기관에 운영권한을 위임)

- 연구사무국(대한민국 현재): 아시아 헌법재판 관련 연구·조사 활동 기획 및 수행
- 행정사무국(인도네시아 현재): 연합과 회원기관에 대한 의전 및 행정지원
- 연수 및 인적자원개발센터(튀르키예 현재): 회원기관 교육 등 시행

- (활동) 설립목적에 따라 연구·조사자료집 발간, 국제회의 개최 등 수행

- 매년 헌법·헌법재판 관련 주제를 선정하고 회원기관들로부터 현황자료를 수집하여 자료집 발간
- 회원기관 재판관급·연구관급 인사를 초청(격년 단위)하여 선정된 연구·조사 주제에 관한 국제회의를 개최

자료: 헌법재판소 자료를 편집

60) AACC*(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개요, * Association of Asian Constitutional Courts and Equivalent institutions

(성격) 아시아의 민주주의·법치주의·인권보호 증진을 위한 아시아 지역 헌법재판기관 간 협의체

(연혁) 2010. 7월 창설 이후 현재 아시아 22개국의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이 회원기관으로 가입하였으며,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초대 의장기관 수행

※ AACC 회원기관 현황: 아프가니스탄, 아제르바이잔, 방글라데시, 인도, 인도네시아, 이라크, 요르단, 카자흐스탄, 대한민국, 키르기즈, 말레이시아, 몰디브, 몽골, 미얀마, 파키스탄, 팔레스타인, 필리핀, 러시아, 타지키스탄, 태국, 튀르키예, 우즈베키스탄

- 당초 동 사업의 예산으로는 1억 2,1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AACC 연구사무국 연구·조사’ 사업의 일반수용비(210-01) 세목⁶¹⁾으로부터 동 사업 공공요금및제세(210-02) 세목으로 8백만원이 조정⁶²⁾되었는바,
- 이는 AACC 연구사무국 사무실 관리비⁶³⁾ 부족에 따른 것인데, 헌법재판소는 2024년 예산편성 시 물가상승 추세를 고려하여 관리비를 증액요구(3,100만원)하였으나, 일부만(1,000만원) 반영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세목조정을 통해 부족분을 충당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 2024년도 ‘AACC 연구사무국 운영’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2025년
	예산액	세목간 조정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예산액
AACC 연구사무국 운영	121	8	129	127	1	117
일반수용비(210-01)	5	—	5	3	2	1
공공요금및제세(210-02)	116	8	123	124	△1	116

자료: 헌법재판소

- 세목은 행정과목인 ‘목’의 하위 예산과목으로서, ‘세목 간 조정’이란 목의 범위 내에서 세목 간에 예산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하며⁶⁴⁾,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하 “집행지침”

61) ‘AACC 연구사무국 연구·조사’ 사업 일반수용비(210-01)는 당초 2,5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800만원이 세목 조정되어, 예산현액 1,700만원 중 1,500만원이 집행되고 200만원이 불용되었음.

62) 세부금액은 7,519,900만원임.

63) 인건비, 수도광열비, 수선유지비 등임.

64) 세목간 조정은 세목간의 금액변동은 있으나, 결과적으로 해당 목의 총액에는 변동이 없음.

이라 함)에 따르면 세목 간 조정은 정보화관련경비 및 인건비의 경우처럼 집행지침 또는 다른 규정에 별도의 제한 또는 사전협의 규정이 없는 한 자체 내부지침에 따라 조정·집행이 가능하므로 집행상 문제는 없다고 할 것임.

- 다만, 2021년도 이후로는 매년 AACC 연구사무국 사무실 관리비 부족에 따라 공공요금및제세(210-02) 세목으로의 조정이 이루어졌는데, 이렇듯 연례적으로 동일한 사유의 세목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최근 4년 'AACC 연구사무국 운영' 공공요금및제세 세목조정 현황 >

(단위: 원)

세부사업	연도	일반수용비 (210-01)	공공요금및제세 (210-02)	세목조정 사유
국제 교류 (1034-305)	2021년	△757,270	757,270	AACC 연구사무국 사무실 관리비 부족분 총당
	2022년	△11,200,000	11,200,000	
	2023년	△14,526,620	14,526,620	
	2024년	△7,519,900	7,519,900	

자료: 헌법재판소

- 인건비 및 공과금 등의 상승에 따라 관리비 집행액 지출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로 볼 때⁶⁵⁾ 필요한 예산을 정확히 반영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이나, 2024년도 헌법재판소의 세입세출예산 명세서를 보면 AACC 연구사무국의 사무실 관리비 납부를 위해 9,103만원이

65) 2021년도의 집행액이 9,139만원 대비 2024년도의 집행액은 1억 1,055만원으로 해당 기간 20.97% 상승하였음.

편성⁶⁶⁾되었는데 이는 3년 전인 2021년도의 관리비 집행액 9,139만원보다도 적은 금액임.

< 최근 4년 AACC 연구사무국 관리비 예산액 및 집행액 현황 >

(단위: 천원)

연도	관리비 예산액	관리비 집행액	부족분
2021년	78,486	91,391	△12,906
2022년	78,486	99,264	△20,778
2023년	80,840	106,456	△25,616
2024년	91,032	110,527	△19,495

자료: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는 예산증액 요구가 일부만 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나, 공공요금및제세(210-02) 세목의 증액이 어려울 경우 예산편성 시 국제교류(1034-305) 사업 내의 목 또는 세목 간 조정을 통해 연례적 세목조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었음.

- 헌법재판소는 동일한 사유로 인한 반복적·연례적 세목조정을 지양하고 편성된 예산이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대로 충실히 집행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66) < 헌법재판소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 명세서 >

[단위 : 천원, 1\$]

2024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210-02]공공요금및제세		121,568	
3.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운영		115,868	
가. 인터넷 이용료		23,836	
1) 국가통신망 업무망	8,164,000원=	8,164	
2) 국가통신망 인터넷망	8,736,000원=	8,736	
3) 사설인터넷망	6,936,000원=	6,936	
나. 관리비(전기, 가스요금 등)	7,586,000원*12월=	91,032	
다. 우편료 및 등록비 등	1,000,000원=	1,000	

9. 헌법재판소 발간물 관련

가. 헌법재판소 발간물 관련 결산 개요

-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업무 지원 등을 위한 발간물들의 발간을 위한 예산은 본부기본경비(1011-250), 헌법재판연구원 기본경비(1011-251), 재판활동운영지원(1031-301), 본부운영지원(1032-302), 헌법재판연구원 운영지원(1033-303), 국제교류(1034-305), 재판자료확충(1035-306) 사업에 일반수용비(210-01)로 편성되어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2024년도에 발간물 발간에 총 3억 4,898만원을 집행하였음.

< 2024년도 헌법재판소 발간물 관련 집행 현황 >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세부사업명	목 명	집행액
①본부기본경비	일반수용비(210-01)	3,795
②헌법재판연구원 기본경비	일반수용비(210-01)	45,269
③재판활동운영지원	일반수용비(210-01)	36,633
④본부운영지원	일반수용비(210-01)	54,695
⑤헌법재판연구원운영지원	일반수용비(210-01)	63,774
⑥국제교류	일반수용비(210-01)	15,368
⑦재판자료확충	일반수용비(210-01)	129,449
합 계		348,983

자료: 헌법재판소

나. 발간물 관련 특정업체에 대한 계약편중 완화 필요

-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업무지원 등을 위하여 7개 세부사업에서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각종 발간물을 발간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헌법재판소판례집’, ‘헌법재판소공보’, ‘헌법재판소 2023 연례보고서’, ‘헌법재판소 구술총서’, ‘헌법재판연구원 연구보고서’ 등임.
- 2024년의 경우, 헌법재판소판례집 발간에 3,658만원, 헌법재판소공보 발간에 3,374만원, 헌법재판소 2023 연례보고서 발간에 3,000만원, 헌법재판소 구술총서 발간에 3,000만원, 헌법재판연구원 연구보고서 발간에 3,550만원 등을 집행하였음.

< 2024년도 헌법재판소 발간물 현황 >

(단위: 천원)

내역사업	발간물명	발간부수	결산액	계약업체	계약방식
[본부기본경비] 용역결과보고서 인쇄비 등	정책개발연구 15권 (헌법재판에서의 사법접근성 강화)	600	3,795	A업체	수의
[헌법재판연구원 기본경비] 교육과정 운영지원 등	2024년도 교육과정 운영 교재(총 22개 과정)	2,300	27,604	B업체	수의
			12,605	A업체	
[헌법재판연구원 기본경비] 헌법재판연구원 기본경비	2024년도 교육용 법령집	1,500	1,188	A업체	수의
[헌법재판연구원 기본경비]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2023년도 연차보고서	350	3,872	C업체	수의
[재판활동운영지원]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 결과보고서	200	913	A업체	수의
[재판활동운영지원] 헌법재판업무지원	헌법실무연구 제24권	350	4,389	B업체	수의
[재판활동운영지원] 헌법재판업무지원	2024 영국 고등법원 판례 번역, 2024 뉴질랜드 대법원 판례 번역	300	1,331	A업체	수의

내역사업	발간물명	발간부수	결산액	계약업체	계약방식
[재판활동운영지원] 헌법재판소 주요인사 구술총서 발간	헌법재판소 구술총서 3, 4	1,200	30,000	D업체	수의 (여성기업)
[본부운영지원] 홍보(공보)활동	헌법재판소 2023 연례보고서	2,500	30,000	E업체	수의 (여성기업)
	만화로 보는 헌재 결정 제10권	1,500	9,812	F업체	수의
	헌법소책자	14,000	12,188	F업체	수의
[본부운영지원] 도서관 운영 및 관리	헌법재판소도서관 이용 안내	200	2,695	A업체	수의
[헌법재판연구원운영지원] 헌법재판연구활동	2024년도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 등(8종)	1,664	9,067	C업체(6종)	수의
			2,529	A업체(2종)	
[헌법재판연구원운영지원] 헌법재판연구활동	2023년도 하반기 연구보고서(9종), 2024년도 상반기 연구보고서(12종)	1,360	35,497	B업체	수의
[헌법재판연구원운영지원] 헌법재판연구활동	2024년도 헌법재판 전문학술지(헌법재판연구 제11권 1,2호)	1,480	9,218	A업체	수의
[헌법재판연구원운영지원] 헌법 및 헌법재판 관련 학술세미나 개최	2024년도 공동학술대회 자료집(1종)	30	379	G업체	수의
[헌법재판연구원운영지원] 헌법재판 국제 학술세미나 개최	2024년도 제13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100	1,705	B업체	수의
[헌법재판연구원운영지원]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개최	2024년도 제8회 우수헌법수업 경연대회 자료집	150	5,379	A업체	수의
[국제교류]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연구·조사	생명권	150	3,531	A업체	수의
[국제교류]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연구·조사	Constitutional Rights and the Environment	200	11,837	H업체	수의
[재판자료확충] 영문헌법재판소판례집 발간	영문헌법재판소판례집(2023)	800	8,470	B업체	수의
[재판자료확충] 헌법재판소결정해설집 발간	헌법재판소결정해설집(2023)	500	6,523	A업체	수의
[재판자료확충] 헌법재판소판례집 발간	헌법재판소판례집 (제35권2집, 제36권1집)	1,000	36,579	B업체	제한 경쟁

내역사업	발간물명	발간부수	결산액	계약업체	계약방식
[재판자료확충] 헌법재판소공보 발간	헌법재판소공보(제327호 ~ 제338호)	6,000	33,737	B업체	제한경쟁
[재판자료확충] 헌법재판소판례요지집 (개정판) 추록 발간	헌법재판소판례요지집 (개정판) 제20회 추록	250	13,640	I업체	수의
[재판자료확충] 헌법논총 발간	헌법논총 제35집	500	15,000	B업체	수의
[재판자료확충] 헌법재판소장 연설문집 발간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연설문집	650	15,500	I업체	수의

- 그런데, 2024년 헌법재판소의 발간물 현황을 살펴보면, 특정 두 업체와 다수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체 계약금액(3억 4,898만원)의 60.94%에 해당하는 2억 1,269만원을 집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2024년 발간물 관련 A업체·B업체 계약금액 비율 >

(단위: 천원)

전체 발간물 결산액 (Ⅰ)	A업체 발간물 결산액 (Ⅱ)	B업체 발간물 결산액 (Ⅲ)	A업체 비율 (Ⅱ ÷ Ⅰ * 100)	B업체 비율 (Ⅲ ÷ Ⅰ * 100)	A업체+B업체 발간물 결산액 (Ⅱ + Ⅲ)	A업체+B업체 비율 [(Ⅱ + Ⅲ) ÷ Ⅰ * 100]
348,983	49,707	162,981	14.24%	46.70%	212,688	60.94%

B업체는 헌법재판소판례집 및 헌법재판소공보의 경우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계약하였으며, 이 두건을 제외하면 계약금액 비율이 26.55%임.

자료: 헌법재판소의 자료를 편집

- 두 업체와의 발간물 수의계약은 모두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하여⁶⁷⁾ 법령상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나 국가의 예산사업

6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이 특정 사업체에 집중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우선, 관례적인 수의계약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 발간물 계약의 경우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상 일반경쟁에 의한 방식은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쉽지 않을 수 있으나, 헌법재판소 연례보고서, 헌법논총, 헌법재판연구원 연구보고서 등 계약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이고, 연례적으로 발간하는 발간물의 경우 제한경쟁68) 방식 등의 계약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

5)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6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제한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의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시공능력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2.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3.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

4.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어 다음 각 목의 품질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에는 그 품질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인지 여부

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물품

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 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중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호의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제품

5.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

6.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 전체 발간물 계약 중 헌법재판소판례집, 헌법재판소공보 단 2건에 대하여만 제한경쟁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헌법재판소 구술총서, 헌법재판소 연례보고서 발간은 2천만원이 넘는 계약이나 법령에 따라 여성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

□ 또한, 다양한 발간물 업체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 발간물 계약의 경우 필요에 따라 소액으로 발간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아 수의계약의 필요성도 있는바, 특정업체에 편중되기보다는 경쟁력을 갖춘 여러 중소기업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이 관례적으로 과다할 경우 성과에 대한 유인이 부족해져 결국 수행이 부실해질 수 있고, 국가기관의 일감 몰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7.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방법에 의하여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기준
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공고한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 8의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방법에 따라 물품 제조·구매 계약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9.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쟁참가자의 재무상태
10.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
 - 가.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 나.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11.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자가 생산한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 여부
 - 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만 해당한다)한 자
 - 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자

아주기 우려가 있을 수 있는 등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⁶⁹⁾.

- 헌법재판소는 발간물 계약에 있어 관례적인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다양한 발간물 업체들을 발굴하여 특정업체에 대한 계약편중을 완
화할 필요가 있음.

69) 발간물 발간 관련 계약업체의 편중은 2024년도에 헌법재판소 자체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임.

참 고 자 료

1. 최근 3년간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조치결과

■ 2023년도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준	조치결과
○ [지적사항] 2024년 6월 말 기준 헌법 연구관 78명 중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조인 출신이 전체의 97%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법조인 출신은 2명에 불과함 - 헌법재판소는 단순히 법률 해석을 넘어 정치·경제·사회학 등 폭넓은 지식을 요구하는 재판이므로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갖춘 헌법연구관들이 헌법적 문제를 다루고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법조인 외에도 다양한 지식과 배경을 가진 헌법연구관이 임용될 수 있도록 비법조인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 제도적 개선책, 유인책을 마련하고 채용 홍보를 적극 추진할 것	제도개선	○ 헌법재판소는 법조인 외에도 다양한 자격요건의 인력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학회 등 광고를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2024년 채용 시에도 헌법학회, 공법학회 등을 통해 채용 홍보를 추진), 법학 외 전공자를 다수 채용함으로써 연구인력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다만, 현재까지는 헌법연구관 지원자 중 다수가 법조인 출신으로 경쟁력 있는 비법조인 출신들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며, 비법조인에 대한 가산점 부여는 형평성 및 우수 연구인력 확보차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지적사항] 헌법재판소는 공무원근로자에 대하여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만을 운영하고 있는데,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DB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혼합 운용할 경우 근로자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장점이 있음. 또한 근로자가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DB형 퇴직연금이 DC형 퇴직연금에 비해 퇴직급여가 많게 됨	제도개선	○ 헌법재판소 재직 공무원근로자의 선택권 보장 등을 위해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을 새로 도입하고, 관할 노동청으로부터 해당 유형의 퇴직연금 규약을 신고 완료함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준	조치결과
- DC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미운용시 적립된 부담금만을 퇴직급여로 받게 되나, DB형 퇴직연금제도는 퇴직 전 평균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함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공무원 근로자의 후생증대 차원에서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 추가 도입을 검토할 것		
○ [지적사항] 헌법재판소는 연례적으로 재무결산 지원용역을 일반수용비로 집행하고 있으나 재무결산 지원용역은 수행기간이 정해진 계약이며, 재무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이 동 용역계약의 주된 과업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일반용역비로 집행하여야 함 -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일반용역비를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상적인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수용비를 ‘사무용품 구입비,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물품의 구입에 대한 대가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재무결산 지원용역을 일반수용비가 아닌 일반용역비로 집행하도록 개선할 것	제도개선	○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시 재무결산 지원용역을 일반용역비로 편성하였음
○ [지적사항] 헌법재판소는 창립 35주년 기념식 기념품으로 무선충전 탁상시	주의	○ 헌법재판소 창립 35주년 기념식 기념품에 대한 주의 사항을 유념하고 행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준	조치결과																									
계 730개를 제작하였는데, 이는 초청 인원 393명, 참석인원 173명에 대비하여 현저히 많은 수량임 - 일반적으로 기념품은 넉넉하게 제작하는 경향이 있으나, 초청인원 수의 2배 가까이 되는 기념품을 제작한 것은 과다한 것으로 보임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향후 기념식 등 행사 계획 및 진행 시 기념품을 과다하게 제작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사의 취지, 행사인원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창립 기념식 등의 행사에 있어 기념품 과다 제작이 없도록 노력하겠음 ○ 아울러, 향후 재판소 기념식 등의 예산 반영에 있어서 면밀한 행사계획을 통해 적정한 기념품 관련 예산을 반영할 예정임																									
○ [지적사항] 헌법재판연구원 기본경비의 최근 4년 집행률을 확인해 보면 지속적으로 약 10% 정도의 불용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특근매식비(210-05), 임차료(210-07), 유류비(210-08), 직책수행경비(250-02) 세목에서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들 4개 비목의 불용액 합계가 3,300만원으로 기본경비 전체 불용액 4,500만원의 약 73%에 이르고 있음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예산의 과다 편성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헌법재판연구원 기본경비 예산을 전년도에 준한 관례적 편성이 아닌 실소요를 감안한 적정한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할 것	제도개선	○ 2024년도 예산안 편성 시 전년도 불용액 등을 감안하여 실소요를 기반으로 해당 예산을 감액하여 조정하였음 (단위: 백만원) <table> <tr> <th>세목</th> <th>'23년 예산액</th> <th>'23년 집행액</th> <th>'24년 예산액</th> <th>증감</th> </tr> <tr> <td>특근매식비</td> <td>9</td> <td>3</td> <td>7</td> <td>△2</td> </tr> <tr> <td>임차료</td> <td>25</td> <td>17</td> <td>17</td> <td>△8</td> </tr> <tr> <td>유류비</td> <td>11</td> <td>4</td> <td>9</td> <td>△2</td> </tr> <tr> <td>직책수행경비</td> <td>83</td> <td>71</td> <td>79</td> <td>△4</td> </tr> </table> ○ 2025년도 예산안에 유류비 및 공공요금및제세 등 감액 편성하였으며, 향후에도 실집행액을 기반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세목	'23년 예산액	'23년 집행액	'24년 예산액	증감	특근매식비	9	3	7	△2	임차료	25	17	17	△8	유류비	11	4	9	△2	직책수행경비	83	71	79	△4
세목	'23년 예산액	'23년 집행액	'24년 예산액	증감																							
특근매식비	9	3	7	△2																							
임차료	25	17	17	△8																							
유류비	11	4	9	△2																							
직책수행경비	83	71	79	△4																							
○ [지적사항] 헌법재판소 내규인 「헌법	제도개선	○ (심의위원회 개최 관련) 2024년 정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준	조치결과
재판소 정책연구용역 관리내규」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하여야 하지만 정책연구용역 과제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만 개최하였을 뿐,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여 내규를 준수하지 아니하였음 - 또한 동 내규는 위원회 심의대상에 정책연구용역 활용상황 점검을 규정하고 있으나, 점검 시기나 구체적 방법 등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고, 활용상황 점검 규정을 보완하여 정책연구용역의 활용도를 제고할 것		연구용역 결과 심의 및 정책연구용역 활용 관련 의견수렴을 위해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개최(’24. 11. 22. ~ 11. 28.)하였음 - 심의결과 ‘적정’ ○ (활용상황 점검 관련) 「헌법재판소 정책연구용역 관리내규」 개정을 통해 정책연구용역 활용절차 관련 조항을 신설함 - 신설 내규안 · 제14조(연구결과의 활용)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활용결과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지적사항] 헌법재판연구원은 2023년도에 체결한 총 18건의 발간물 수의계약 중 14건(77.8%)을 한 업체와 체결하였고, 총액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연구보고서 발간용역을 두 차례 나누어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였음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 과다 체결을 지양하고, 경쟁입찰을 해야 할 발간 계약을 분할 수의계약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	시정	○ 2024년도 교육책자 및 연구보고서 발간 시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을 지양하고 역량 있는 신생업체들을 발굴하여 분산 계약함 - 전체 발간물(30건) 중 A업체(13건, 43.3%), B업체(10건, 33.3%), C업체(7건, 23.3%)로 다변화 노력하였음 ○ 2025년 「헌법재판연구원 연구보고서」 발간 시 공개 제한경쟁입찰 방식을 반영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준	조치결과
		임 - 입찰 공고 및 제안서 기술평가 등 경쟁입찰 절차를 거쳐 인쇄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음
○ [지적사항] 헌법재판소는 2023년 11월에 AACC(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러시아어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완료하였으나 동 홈페이지 구축·운영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하지 아니하여 8개월이 지난 2024년 7월에서야 그 운영을 개시함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향후 홈페이지 구축 등 정보화 사업 시 사전에 구축·운영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것	제도개선	○ '24. 7. 12. AACC 및 정부 유관기관 홈페이지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AACC 연구사무국 러시아어 홈페이지 운영을 개시하였음 ○ 향후 홈페이지 구축·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사전에 국제정세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지적사항] 헌법재판소는 전자헌법재판센터의 운영을 시작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스템의 활용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23년도 기준 전자접수율 51.3%, 전자송달율 39.2%)에 머물고 있음 - 법원이 제청하는 위헌법률심판은 법원과의 협의를 통하여 전자접수로의 전환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전자접수·전자송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헌법재판 접근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	제도개선	○ 전자접수·전자송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헌법소원 전자접수 등에 대한 안내자료를 제작·배부하였고, 법조인과 민원담당자 대상 사용자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전자헌법재판센터 이용 편의성 증진을 위해 시스템 개편을 진행 중에 있음 - 전자접수율·전자송달률은 과거 대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향후에도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전자접수율: ('17년) 33% → ('24년) 46% 전자송달률: ('17년) 33% → ('24년) 39% ○ 또한, 전자헌법재판센터활성화를 위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준	조치결과
고 헌법재판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자헌법재판센터를 통한 전자접수 및 전자송달의 활용도를 높여 갈 수 있도록 개선할 것		해 '24년도 기능개선 작업을 추진하였음
○ [지적사항] 다양해진 헌법소원 사건에 대응하고 연간 2,500건이 넘는 헌법재판 접수 건수 처리를 위하여 헌법연구관 채용에 있어 분야별 전문가를 채용하는 등 헌법재판의 충실한 지원을 위한 인력충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헌법연구관 1인당 사건처리 건수: 2023년 기준 46.6건임 - 인건비 불용액은 퇴직·휴직 및 신규채용 지연 등의 사유로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헌법연구관(보) 채용에 소요되는 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이므로 채용 소요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하여 결원에 대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헌법연구관(보) 채용에 있어 채용시기를 다양화하여 결원에 대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이직 방지 및 인력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 헌법재판소는 헌법연구관의 업무공백 최소화 및 이직 방지를 위해 헌법연구관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으며, - 2025년도에는 법관·검사의 재판수당·수사지도수당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헌법연구관의 심판수당을 인상하였음 ○ 매년 연구인력 확충을 위해 와 협의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헌법연구관 2명을 증원하였음 ○ 다만, 헌법연구관 채용시기 다양화는 채용 지원자의 예측성 보장과 우수 연구인력 확보차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바, - 헌법연구관들의 휴직, 퇴직 예정 현황을 사전에 면밀히 모니터링 함으로써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겠음
○ [지적사항]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헌법재판소가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3년도 본안	제도개선	○ 헌법재판소는 전자접수를 통한 무분별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22년 9월 전자헌법재판센터의 사용자등록이 심판절차 지연이나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준	조치결과
심리에서 처리된 헌법재판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약 2년 3개월로 법정 처리기간을 4배 이상 초과함 - 해당 연도 말까지 처리되지 못한 미제 헌법재판의 수도 2023년 말 기준 1,600건을 넘어서고 있으며, 10년 사이 2배 가량 증가함 (2014년 824건 → 2023년 1,604건)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헌법연구관으로 구성된 연구부 조직과 인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헌법재판 청구 남발에 대한 실효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심판사건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		권리 남용 등 본래의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항)을 신설하였음 ○ 더불어 '24년 2월부터 연구부에 사전 심사부를 신설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 심사를 보다 효율적이고 균질성이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사건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 아울러, 남소 방지 및 신속한 사건 처리 등을 위하여 여러 차례 관련 연구용역 및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있는 바, 추후에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음
○ [지적사항] 헌법재판소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사무용 가구를 구매하면서 1천만원 이상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중소기업 직접 생산 확인 의무를 피하기 위하여 분할 계약을 진행했는데, 이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취지에 어긋나며 사실상 중견기업의 제품을 우회하여 구매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기	제도개선	○ 향후 중소기업 직접 생산 확인 의무 준수하고 중소기업을 지원, 육성하고자하는 관련 규정의 취지에 유념하여 구매계약을 진행할 예정임 ○ 또한, 사무용가구 교체사업 시 면밀한 구매계획 수립으로 필수 교체 소요를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사무용 가구 구매를 지양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음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준	조치결과
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 시 법률에 따라 경쟁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할 것		

■ 2022년도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준	조치결과
○ [지적사항] 인건비 예산의 불용률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증가하는 추세였고, 2022년에는 불용률이 낮아졌으나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인건비 집행률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주의할 것	주의	○ 2023년도 인건비 집행률을 면밀히 관리하여 2022년에 이어 불용률이 감소하였음(2022년 4.6% → 2023년 2.7%) ○ 향후에도 면밀한 소요 예측과 검토를 통한 인건비 예산 편성으로 인건비 불용률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지적사항] 2018년부터 2022년까지 9명이 증가했는데, 이는 헌법재판소에 심판사건 접수 건수 증가 등에 대응해서 헌법심판사건을 충실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함임 - 2022년 헌법재판의 처리를 담당하는 인원은 총 67명(법원, 검찰청 파견 인원 13명 포함)이 4,347건을 처리 - 헌법연구관 1인당 평균 사건 처리건수는 2022년 38.8건으로 2018년 40.8건과 비교해서 줄었고, 평균 사건 처리기간은 2022년 732.6일로 2018년 569.1일과 비교해서 증가함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 등의 증가로 업무부담이 커지고 있는 사실관계 확인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동 업무의 수행체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헌법연구관 정원의 적정 수준에 대해 검토할 것	제도개선	○ (사실관계 확인 업무 관련) 신속한 심판사건처리를 위해서는 적시성 있는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수적인 바, 헌법연구관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통합적인 수행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18. 6월 개정) 및 ‘헌법연구관의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 내규’(‘21. 12월 제정)를 제·개정하여 사실조사 업무를 실시하고 있음 ○ (헌법연구관 정원 적정 수준 관련) 충실하고 신속한 심판사건 처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연구부 인력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에도 기재부와 의 헌법연구관 증원 협의를 통해 총 3명을 증원하였음 - 향후에도 기재부와 의 협의 및 검토를 통해 적정 수준의 헌법연구관 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준	조치결과
		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지적사항] 2022년 헌법연구관 정원은 69명이나 현원은 59명으로 정원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 2018년 이후 헌법연구관 정원은 확대되었으나 헌법연구관의 현원은 정원 대비 7~10명이 미달함 ○ 2018년부터 2022년까지 20명이 신규임용된 반면 퇴직자도 9명에 달하고 있으며, 퇴직자 중에는 헌법연구관의 임기 10년을 충족하지 않고 5년, 6년, 7년 근무 뒤에 퇴직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음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연구원 등에 배치된 헌법연구관 등에 헌법재판 사건의 업무 분담 또는 탄력근무제 실시 등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헌법연구관의 조기 퇴직 사유와 근무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헌법연구관의 장기재직의 유인책을 마련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 충실한 심판사건 연구업무를 위한 헌법연구관의 현원 확보 및 결원과 연평균 휴직신청 인원 등을 고려하여, 2023년에 헌법연구관 채용시험을 거쳐 총 10명의 합격자를 선정하였고, 2024년에 순차적으로 헌법연구관(보)으로 임용할 예정임 ○ 이와 더불어 헌법연구관의 장기근속 방안 등을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헌법연구관의 현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지적사항] 헌법재판소는 예산안 작성 지침에 따른 직책수행경비 지급단가를	제도개선	○ 2024년도 예산안 편성 시 실소요를 감안하여 직책수행경비 예산을 감액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준	조치결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현재까지의 직책수행경비 지급 추이를 살펴볼 때 회계연도 중에 예측하기 어려운 소요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면밀하게 소요를 파악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직책수행경비 부족분이 발생하거나 불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예산안 편성 또는 심의 단계에서 직제 개편 또는 증원에 따른 직책수행경비의 실소요를 정밀하게 파악하여 반영하고, 직책수행경비와 관련된 연계적인 조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개선할 것		조정 하였음 * ('23예산)1,274,496천원 → ('24예산)1,269,696천원 ○ 향후에도 직책수행경비 예산 편성시, 증원 및 휴직 소요 등을 면밀하게 파악함으로써 직책수행경비의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 [지적사항] 헌법재판소는 제헌절, 헌법재판소 창립일, 법률신문 창간 기념일에 맞춰 연 3회 법률신문에 광고를 게재하는데, 그 내용이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다짐을 추상적으로 제시하는 것에 불과함 - 지하철캠페인과 유사하게 헌법재판소의 국선대리인 제도나 전자헌법재판센터와 같은 제도와 헌법재판소의 시설 및 행사를 소개하는 등 법률신문 독자들에게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법률신문 광고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개선할 것	제도개선	○ '23. 8. 31. 지면광고부터 상징적인 광고 문구를 지양하고 전자헌법재판센터, 국선대리인 제도 등 수요자 친화적인 광고를 게재하고 있음
○ [지적사항] 2022년 헌법재판소 정원은	제도개선	○ '23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준	조치결과
343명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를 때, 13명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하나 현행 산정방식에 따를 때 11명의 장애인을 고용한 상황으로, 기준에 2명이 미달하여 의무고용을 미달성한 상황임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합리적인 장애인 고용계획을 수립하고 신속히 추진할 것		할 수 있도록 채용계획을 수립·실시하고 있으며, 장애인인 공무원을 신규 채용('23. 8. 29.)하여 장애인 의무고용 목표비율을 달성하였음(13명, 3.6%)
○ [지적사항] 2022년 「행정안전부 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에 따르면, 임차차량은 한시기구 등에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차량임차시 구매와의 비용차이를 최소화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계약을 체결해야 함 - 2022년 헌법재판소는 권익위 권고사항을 무시하고 헌법재판소장 관용차를 수의계약으로 임차함 ○ 헌법재판소가 승용의 대형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한 차량을 업무용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임대기간을 5년으로 하는 것은 최단운행연한인 8년에 미달하므로 공용차량관리 규정에 반할 소지가 있음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임대차량에 대한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임대기간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개선할 것	제도개선	○ 해당 계약은 추정가격이 1억 이상으로 조달청에 의뢰하여 입찰공고를 진행하였으나, 두 차례 이상 유찰된 것으로 재공고입찰에 부쳐도 입찰자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 추진이 가능한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음 ○ 「물품관리법」 제2조에 따라 동법 제16조의2, 「조달청고시」내용연수의 최단운행연한(8년)은 구매 차량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임차차량의 경우 적용되지 않음 - 다만, 헌법재판소는 임차차량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및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의 기관특성, 예산상황, 용도, 유지비용 등을 고려하여 최초 임차 계약기간을 최대범위(5년)로 설정하는 등 임차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향후 임대차 계약 진행 시, 국가계약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준	조치결과
		법 등 입찰·계약 관련 법령을 준수하 고 예산규모에 따라 공정한 경쟁입찰 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지적사항] 동일인이 다수청구, 반복청 구한 사례가 전체 헌법재판 청구 사건 의 약 1/3 (31.1%, 23,939건 중 7,456건) 에 해당하고 있는데, 이는 신속한 재 판을 어렵게 하고 헌법재판소의 원활 한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가 있음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동일인 의 다수청구, 반복청구에 대한 대응방 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 전자접수를 통한 무분별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22년 9 월 전자헌법재판센터의 사용자등록이 심판절차 지연이나 권리 남용 등 본 래의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정지하 거나, 사용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 록 하는 근거 규정('헌법재판소 심판 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항)을 신설하였음 ○ 아울러, 남용 방지 및 신속한 사건 처 리 등을 위하여 여러 차례 관련 연구 용역 및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있는 바, 추후에도 이와 관련한 여러 연구 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필요 시 규 정 개정 등을 추진하겠음
○ [지적사항] 최근 10년(2013년~2022년) 동안 헌법재판의 접수 건수는 2013년 1,480건에서 2022년 2,829건으로 1,349 건이 증가함 - 이 중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헌마 사건)은 2013 년 982건에서 2022년 2,322건으로 1,340건으로 증가했고, 헌마 사건에 대한 각하 결정은 2013년 748건에서 2022년 1,915건으로 1,167건 증가함	제도개선	○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인들의 권리가 구제될 수 있도록 민원상담 과정에서 청구요건 과 절차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청구요건의 보정이 불가능한 경우는 다양한 행정적 권리구제제도에 대하 여 안내하고 있음 - 다만, 사건서류의 형식적 요건 이외 에 실질적 청구요건 충족 여부를 사 전에 판단하여 안내하는 것은 심판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준	조치결과
(2023년 6월말 기준) ○ 헌법소원심판의 각하결정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향후 사전에 소송 요건을 안내할 필요가 있음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민원심상담 안내, 지능형 민원상담(챗봇) 운영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심판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인들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을 안내하는 등 실효성 높은 방안을 검토할 것		청구 접수단계에서는 한계가 있음 ○ 향후 청구인이 청구요건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자료를 제작·배부하고 민원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지속할 계획임
○ [지적사항] 헌법재판소는 직원의 직급과 과정에 따라 정해진 자기부담금을 지불하도록 하고 나머지를 지원하고 있는데, 수강생이 해당 과정을 미수료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지원한 수업료를 수강생으로 하여금 추가로 납부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은 미비한 상황임 - 2022년 전화외국어 수강인원 158명 중 국장급 이상 직원 2명, 3~5급 직원 중 9명이 해당 과정을 수료하지 못함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전화외국어 과정을 미수료한 직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지원한 금액의 일부 내지 전부를 반환하도록 하는 등 책임감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것	제도개선	○ 2024년도 1분기 전화외국어 과정부터 미수료한 직원에 대해 지원한 수업료의 일부를 반환하는 내용을 어학과정 운영계획에 반영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준	조치결과
○ [지적사항] 최근 3년간 헌법재판소가 실시한 정책연구용역 중 구체적인 제도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는 연구가 있고, 해당 연구에 지출된 금액이 상당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해당 연구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개선방안과 그 달성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침 마련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2020년 ‘AACC 및 연구사무국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 2021년 ‘헌법재판연구원 연구 및 교육기능 강화방안’ 그리고 2022년 ‘신속한 기본권 구제를 위한 심판업무 개선에 관한 연구’가 실시됨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연구결과를 실무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개선계획의 구체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고, 이행여부 및 진척도 등을 점검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연구결과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할 것	제도개선	○ 구체적인 제도개선을 목표로 하는 연구용역의 경우, 실시 후 해당 부서에 용역 결과물을 전달하여 활용하고 있음 ○ 향후 ‘정책개발 연구용역’ 결과물이 산출되면 관련 부서로부터 ‘정책개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 및 ‘정책개발 연구용역 활용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아 연구용역 결과 활용상황을 적극적으로 점검할 예정임 ○ 또한, 필요한 법 개정이나 예산 확보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음
○ [지적사항] 헌법재판의 처리 기간이 2년을 경과한 사건이 2018년 191건에서 2022년 214건으로 증가하고 있음 ○ 헌법재판연구원의 법률상 주요 기능은 헌법재판 연구이고, 조직에는 제도연구팀, 기본권연구팀 등이 있으므로, 처리기간이 2년을 경과한 사건 해결을 위한 헌법재판연구원의 역할을 강화할	제도개선	○ 헌법재판연구원은 신속한 사건처리 지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과제의 헌법재판 관련성 제고와 연구원의 기능 및 인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 - (연구과제의 헌법재판 관련성 제고) 연구업무 내규를 변경하여 연구과제 선정 시에 헌법재판 실무와의 실질적 관련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으며, 연구과제 선정 전 재판부와 연구부로부터 연구과제 제안 목록을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준	조치결과
필요가 있음 ○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은 법정 상한인 40명에 미달하는 38명이고 현원이 33명이고, 헌법재판연구원 운영지원 예산 가운데 헌법재판연구활동 예산은 1억 3,500만원으로 운영지원 예산 18억 5,800만원 중 비중이 적은 측면이 있음 ○ 헌법재판연구원이 심판사건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기능과 인력이 강화되어야 하지만, 헌법재판소도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확대되어야 할 성과·사례를 국회 등에 설명하는 노력 필요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 사건의 처리 등에 헌법재판연구원 인력의 활용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접수하여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있음 - (연구보고서, 세계헌법재판 조사보고서 국회 배부) 매년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과제 발간보고서를 국회 관련 부서(의장실, 법사위원회실, 위원회, 국회도서관 등)에 송부하여 연구과제 성과를 공유하고 있음
○ [지적사항] 헌법재판소는 미국에서 유학하는 LLM 과정이 아닌 헌법연구관에게 지급 기준액 보다 5,680달러를 추가로 지급하였는데, 이는 「헌법재판소 공무원의 국외연수에 관한 내규」에 따라 매달 500달러를 추가로 지급하였기 때문임 - 당시 헌법재판소는 환율 상승 등의 이유로 학자금에 사용되는 일반수용비를 전용하여 체재비를 지급하였는데, 체재비 추가 지급액은 규정에 따른 것이나 전용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상	시정	○ 2025년도 해외연수 사업 예산 편성 시 「헌법재판소 공무원의 국외연수에 관한 내규」 등 집행 소요 자료를 근거로 체재비 추가 지급액을 반영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함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준	조치결과
황에서 추가지급을 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현행 규정 등 추가 지급액 소요를 입증할 자료를 근거로 추가 지급액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		
○ [지적사항] 재판자료확충의 내역사업 중 영문헌법재판소 판례집, 헌법재판소 판례집, 헌법재판소 결정해설집, 헌법재판소 공보 등 발간 사업의 2022년 예산 1억 3,900만원 중 1억 200만원이 집행되었고(집행률 73.3%), 발간비 예산 1억 1,100만원 중 8,400만원(집행률 75.7%)이 집행됨 ○ 헌법재판소는 책자 발간 외에도 홈페이지에 발간물과 동일한 내용의 PDF 파일을 게재하여 온라인을 통해서 발간물 자료를 배포중임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발간물의 온라인 배부가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하여 희망하는 기관에 메일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온라인 배부를 확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실소요에 맞게 헌법재판소 책자 발간 예산을 조정할 것	제도개선	○ 현재 판례집, 공보, 영문판례집, 판례요지집, 결정해설집 등 홈페이지에 PDF 등 전자파일 형태로 게시 중 - '23년도 발간물 외부 홈페이지 게시 완료(12월) ○ 발간수량의 경우, '19년 발간물 배부기관을 대상으로 활용실태를 조사하여 실소요에 맞게 발간수량을 대폭 감축*(△4,750부, △34%)하였으며, * ('19년) 14,050부 → ('23년) 9,300부 ○ 발간예산 또한, '18년 이후 매년 동예산을 감액조정(△88백만원, △41%)하였음 * ('18년) 214백만원 → ('23년) 126백만원 ○ 앞으로도 수시 수요조사를 통한 발간물 수요를 파악하여 발간수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예산을 적정히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음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준	조치결과
○ [지적사항] 헌법재판소는 업무추진비를 정부구매카드로 집행하는 부분의 카드사용액에 대해 카드승인건별로 디브레인에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2회씩 일괄하여 지급처리하는 방식으로 예산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게 업무추진비를 집행함 - 업무추진비 개별 사용내역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증빙의무가 있는 사용건인지, 사용 제한업종 및 시간대에 집행된 것인지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결산심사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 ○ 헌법재판소는 2022년 12월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 개별적으로 지급처리를 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 사용의 목적과 용도를 파악하기 어렵게 하고 있음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2022년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과 증빙서류 사본 등을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업무추진비 예산 지급처리 및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기재 시 요구조건에 맞추어 세부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제도개선	○ '22년도 집행내역의 경우 디브레인 시스템 상 이미 처리가 완료되어 사용내역을 추가로 기재하여 모든 집행내역을 포함한 자료를 제작하기 힘든 상황인 바, 1분기 분량의 자료를 수작업하여 요청 의원실에 제출하였으며, '22년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집행의 투명성을 점검 받은 바 있음 ○ 또한 '23년 1월부터 업무추진비 예산 지급처리 및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기재 시 요구조건에 맞추어 업무추진비 카드승인 내역을 건별로 처리하여 세부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 [지적사항] 재판자료확충 사업의 경우 당초 계획 대비 실제 간행물의 발간분량이 적게 나타남에 따라 각종 발간물의 발행을 위해 편성된 예산의 불용이 연례적으로 발생	제도개선	○ 불용액 감소를 위해 '18년 이후 매년 발간사업 예산을 감액 편성('18년 214백만원 → '23년 126백만원) 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 동 사업예산 집행률 또한, '22년 73%에서 '23년 92%로 19% 증가함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준	조치결과
- 헌법재판소 발간물 간행 관련 사업의 경우 2022년 예산 1억 8,900만원 중 1억 5,100만원만 집행하고 3,800만원을 불용 - 간행물 발간비의 집행부진 문제는 연례적으로 발생해 온 것으로, 최근 3년간 집행률이 일부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관련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되고 있음 - 발간비 및 원고료의 집행이 부진하게 나타나는 주된 원인은 예산 계상 시 발간물의 권당 면수와 원고료 지급 대상 원고의 종류 및 분량을 과다하게 계상하였기 때문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과거 연도 간행물 발간 실적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계상하여 발간 비용의 과다 산정으로 인한 예산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		○ 다만, 발간물의 특성 상 발간예산 편성 시 원고 분량, 배부수 등을 정확히 예측하여 편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감안하여 주시길 바라며, - 향후에도 발간예산의 집행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보다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률 또한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지적사항]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심판사건 처리 기간은 180일 이내이지만, 심판사건 처리기간이 2년 이상 경과한 사건 수가 2018년 191건에서 2022년 214건으로 증가함 ○ 2017년에 접수되었으나 2023년 7월말까지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사건이 21건 있음 - 헌법재판소의 과도한 장기미제 사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었고, 헌법연구관의 인력 확충	제도개선	○ 헌법재판소에서는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연구부 인력을 확충하고 있으며, 장기미제 사건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하여 근무경력이 많은 연구관들로 구성된 장기미제부를 한시적으로 신설('23. 2. 12.) 운영하고 있음 ○ 향후에도 사건처리 지연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정비 방안을 계속 검토할 계획임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준	조치결과
등 사건의 신속처리를 위한 헌법재판소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변화를 확인하기 어려움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소원 등 심판사건의 처리기한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접수한 날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사건에 대해서는 종국 결정이 신속하게 선고될 수 있도록 심리 지원 역량을 집중하는 등 별도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것		○ 다만, 헌법재판은 대세효가 있어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선진외국의 헌법재판관례 및 입법례 조사, 국내외의 연구자료 수집·분석, 관련기관의 의견 취합 등의 과정이 필요한바, 기본적으로 심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
○ [지적사항] 2022년 헌법재판연구원 운영지원 사업비 중 청사 임차료 비중이 81.5%로서 2020년 비중 79.7%보다 상승함 - 헌법재판연구원이 개원한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임차료 177억 7,600만원 지출했으며, 2024년부터 계약만료시점인 2047년까지 24년간 추가로 357억 1,200만원의 예산의 추가 지출 예상됨 ○ 임차료 예산의 과다 지출은 헌법재판연구원 본연의 기능인 연구와 교육에 영향을 주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임차료 절감을 위해 청사 이전 등을 포함한 근본적인 청사 수급 계획 마련과 함께 그 이전에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개선	○ 헌법재판연구원은 청사 임차료 과다 문제를 해소하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청사 이전 및 단기적인 임차료 절감을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 - (장기대책: 청사 수급계획 마련) 청사 임차료의 절감 및 안정적인 업무공간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는 통합청사 입주(‘29년 예상, 관련계획 국회심의 통과)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임차료 과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단기대책: 효율적인 청사공간 활용) 청사 임차료 절감을 위한 대책으로 시설축소 등을 고려할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인바, 청사이전 전이라도 교육과정 신설(3개 과정 중)하고 대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연구원 교육기능 강화를 통해 임차료 절감효과를 달성할 수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준	조치결과
구체적인 청사 임차료 절감 계획을 마련하여 실행할 것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지적사항] 헌법재판사건에서 사선대리인이 대리한 사건의 인용률이 국선대리인이 대리한 사건의 인용률보다 높음 - 국선대리인과 사선대리인의 인용률은 2018년 국선대리인 10.2%, 사선대리인 29.0%로 사선대리인의 인용률이 3배 정도 높았고, 2020년도는 국선대리인 11.2%, 사선대리인 15.2%로 역시 사선대리인이 4%포인트 높았으며, 2022년도에는 국선대리인 9.1%, 사선대리인 17.1%로 사선대리인이 8%포인트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국선대리인의 인용률이 사선대리인의 인용률보다 낮은 원인을 비교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 사선대리인 선임사건의 경우 승소가 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사건 수임이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최근 국선대리인 선임사건에 비해 인용률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다만, 2010년 이후 국선대리인 선임 사건 인용률이 사선대리인 선임사건 인용률보다 높았던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음 ○ 헌법재판소는 국선대리인 예정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헌법재판 경력 및 전문분야, 과거 국선대리활동에 대한 평가를 적극 고려하는 등 헌법재판에 대한 이해와 숙련도가 높은 국선대리인단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앞으로도 국선대리인이 보다 적극적이고 내실있는 심판대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 보수 현실화 검토, 초청연수 실시, 모범국선대리인 포상 및 홍보 강화 등의 노력을 지속하겠음

■ 2021년도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준	조치결과
○ [지적사항] 헌법연구관의 비서실장 및 공보관 겸임, 육아휴직에 대한 별도 정원 운영 비활용 등으로 인력부족과 인건비 불용이 발생하고 있음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헌법연구관의 겸임 축소, 육아휴직자에 대한 별도정원 운영 등 적극적인 인사관리를 통해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한 인력 확보와 동시에 인건비의 충실한 집행을 도모할 것	주의	○ 인건비의 경우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심사 시 실소요를 감안하여 241백만원을 감액조정 하였음 * 32,101('23요구)→31,860백만원('23확정) ○ 향후 육아휴직에 따른 별도정원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등 정원관리의 효율성과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음
○ [지적사항] 업무추진비 집행액 중 95.1%인 6억 9,300만원을 정부구매카드로 집행하면서 해당 카드사용액에 대해 카드승인건별로 사용내역을 기재하지 않고, 매월 2회씩 세부사업·비목별 총액으로 일괄 지급처리함 ○ 이와 같은 지급처리는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고, 건당 50만원 이상인 사용한 경우의 증빙의무, 사용 제한업종, 사용 지역 및 사용시간대 제한 등의 준수 여부 확인이 어려워 국회의 원활한 결산심사를 저해함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업무추진비로 편성된 예산의 지급처리에 있어	주의	○ 2023년부터 업무추진비 정부구매카드 사용액에 대해 카드승인건별로 사용처 및 사용금액을 기재하여 지급처리하고 있음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준	조치결과
서 예산집행지침 및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요구조건에 맞추어 정부구매카드 승인건별로 사용내역을 기재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주의할 것		
○ [지적사항] 재 판부는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에서 변론을 열고 참고인 등의 진술을 들을 수 있는데, 재 판부가 직권으로 참고인을 선정한 사례가 적게 나타나는 등 해당 제도를 소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참고인, 증인, 감정인 등에게 여비, 일당 등을 지급하기 위한 보전금 사업 내역은 2018년 이후 2021년까지 평균 13%의 집행률에 그치고 있음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재 판부 직권으로 참고인을 선정하는 방식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참고인 연구비 내역사업 등의 예산 집행률을 개선하고 헌법 재 판의 변론을 활성화할 것	제도개선	○ 2021회계연도 참고인 연구비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하였으나, 2022회계연도에는 총 8회의 변론 중 7회·17명의 참고인에게 연구비로 2,550만원을 집행하였음(141.7%) - 또, 2022회계연도에는 재 판부 직권으로 1명의 참고인을 선정하였음 ○ 향후에도 헌법재판소는 변론 제도와 참고인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음. 다만. 사건의 성격, 변론 횟수 등 여러 사정에 따라 참고인 연구비의 지출은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점도 이해해주시기 바람
○ [지적사항] 헌법재판소운영 프로그램의 성과지표를 심판사건처리율을 기준으로 측정하고 있는데, 심판사건 처리율 목표치를 2020년 100.0%, 2021년 95.0%, 2022년 94.0%로 매년 하향하고 있고, 성과지표 측정방식에서 과거 미처리 사건을 제외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제도개선	○ 정확한 성과 달성도 측정을 위해 과거 미처리 사건에 대한 처리실적을 성과지표에 반영하였음 [성과지표: 심판사건처리율] - 측정산식: 처리사건/접수사건×100 * 접수사건: 본년 접수사건 + 과거연도 미처리 사건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준	조치결과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운영 프로그램의 성과지표 설정에 있어서 도전적인 목표치를 설정하고, 누적 미제사건 수를 성과지표에 반영하는 등 사업의 목표달성 정도를 정확히 측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지적사항]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고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원재판부가 본안 심리를 통해 처리한 사건은 연평균 500여건이고 평균 처리기간은 1년 6개월 정도가 소요되었음 ○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지원하는 조사·연구 업무수행에 다수의 헌법연구관을 배정할 수밖에 없는 데에는 같은 사람이 동일인이 같은 해에 50건 이상을 청구한 남소의 접수건수가 크게 증가하는 것도 부분적으로 영향이 있다고 판단됨 - 남소건은 2012년 326건에서 2020년 1,193건, 2021년 846건으로 증가하였고, 남소건의 대부분(2021년 99.9%)이 형식적 요건 미비로 각하됨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의 처리지연을 해소하고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면서도 남소를 방지하는 대책 등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	제도개선	○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22. 9.)하여 사용자등록이 심판절차 지연, 권리의 남용 등 본래의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등록 사용자의 전자헌법재판센터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국민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요건과 방법을 잘 인식할 수 있도록 민원실을 통한 상담 안내, 홈페이지·홍보문화·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헌법소원심판의 요건과 절차 등을 계속 안내하고 있음 ○ 앞으로도 인적·물적 자원의 확충과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사건처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음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준	조치결과
○ [지적사항] 헌법연구관 결원 중 6명은 인사명령 방식의 변경(검임→전보)이나 육아휴직자에 대한 별도정원 운영으로 결원 해소가 가능하므로 적극적인 인사를 통해 지원인력을 실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고, 헌법재판연구원 내 연구 관련 상위 보직을 전부 헌법연구관으로 임명하는 인력운영 방식이 일반임기제 책임연구관의 높은 퇴사율(개원 후 퇴사율 60.0%)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연구원 내 상위보직에 헌법연구관을 임명하는 인력운영 방식이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원의 높은 퇴사율의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본안심리를 지원하는 헌법연구관의 현원을 확대하는 등 헌법연구관 인력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 우수인력 확보와 연구성과 제고 등을 위해 책임연구관(원)은 높은 보수 지급이 가능한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등 책임연구관(원)의 처우개선에 각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 헌법재판연구원의 기능을 고려하면 헌법재판연구원 팀장급에 헌법연구관 배치가 필요함 ○ 재판활동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헌법재판연구원에 배치된 헌법연구관 축소보다는 헌법재판소 연구부에 근무할 헌법연구관 정원의 추가 확보가 필요함 - 앞으로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적시에 충분한 헌법연구관 인력증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지적사항] 연도 중 처리하지 못한 미제사건수는 2012년 848건에서 2021년 1,518건으로 증가하였고, 2년이 넘은 미제사건 수 역시 62건에서 282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심판청구 접수건이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제한된 심판지원 인력으로 심판기간이 지연되는 것은 불가피한 점이 있다고 보이나, 청구인이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심리	제도개선	○ 재판소에서는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하여 연구부 개편을 통한 투트랙 제도 도입, 동종사건 병합 심리, 장기미제 사건목록에 대한 재판부 통지 등의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다만, 헌법재판은 대세효가 있어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크므로, 선진 외국의 헌법재판판례 및 입법례 조사, 국내외의 연구자료 수집 및 분석, 관련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준	조치결과
기간이 장기화되는 것은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화하는 측면이 있음 - 2022년 6월말 기준으로 5년 넘게 심리중인 사건은 총 17건임(이 중 2022. 7. 21. 8건 선고)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사건심리의 과도한 장기화 방지를 위해 일정기간을 경과한 심판사건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검토를 실시하는 등 내부적인 처리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기관의 의견 취합 등의 과정이 필요한 바, 기본적으로 심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 ○ 향후에도 사건처리 지연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정비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임
○ [지적사항] 재판자료확충 내역사업에는 영문헌법재판소판례집, 헌법재판소판례요지집 등 각종 간행물의 발간을 위해 약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이중 8,100만원만이 집행되어(집행률 68.0%) 집행실적이 저조한 편임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영문헌법재판소판례집 등 간행물에 대한 필수적 수요를 재검토하여 그 물량을 최소화하고, 관련 예산의 과다한 불용률을 감안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할 것	제도개선	○ 간행물 수요 재검토를 통해 2022년 ‘헌법재판자료집’의 발간을 중단하였고, 2023년 간행물 발간비 예산*은 실행 소요를 감안하여 2021년 대비 23백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음 * 발간예산(한시사업 제외): (‘21년) 120 → (‘22년) 110 → (‘23년) 96백만원 ○ 향후에도 간행물의 활용 현황 및 실행 수요 조사를 통해 발간량을 조정하고 발간비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겠음
○ [지적사항] 2021년 예산안을 제출할 당시 「헌법재판연구원 10년사」와 「헌법재판연구원 10주년 기념 영어논문집」간 관련 사업은 예산안 편성 시에 예	제도개선	○ 2023년 기본경비 편성 시 차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필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안을 기재부에 제출, 협의 편성하였음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준	조치결과
상 가능한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예산안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역변경과 세목조정으로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안 심사권 약화를 초래한 측면이 있음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향후 기본경비 예산을 편성할 때 차년도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세목조정 등 예산조정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할 것		○ 향후에도 예산 편성 시 차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필요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조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 [지적사항] 내역사업인 ‘정보시스템 위탁운영’으로 운영되는 정보시스템 중 전자헌법센터는 사건 등의 제출·송달·기록 열람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헌법재판 사건의 전자접수율이 50%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정체되어 있고, 전자송달의 경우 정부 간의 문서유통을 제외하면 4,577건으로 우편송달 건수 5,710건에 미치지 못하며, 기존 우편송달을 전자송달로 전환 신청한 건수의 증가세도 둔화된 것으로 나타남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전자헌법재판에 대한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소자·고령자 등의 서비스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시스템 편의성 및 이용안내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홍보를 추진하여 전자헌법재판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제도개선	○ 홍보리플릿 제작 및 배부(법원, 검찰청 등 427개소), 지하철 와이드컬러 광고 실시, 민원상담(방문 및 전화) 등을 통해 전자접수 이용 권유 등 안내를 통해 심판사건의 전자접수 및 송달시스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홍보 및 안내를 실시하였음 ○ 또한, 전자헌법재판센터의 전반적인 시스템 안정성을 개선하였고, 청구서 작성을 대화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능형 민원상담 가이드(챗봇 서비스)를 구축하여 서비스 중에 있는바, 향후 전자헌법재판센터 이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함

2. 연도별 심판사건 접수·처리 현황

(단위: 건)

구 분		접수			처리											미 제	
		계	전 년 미 제	금 년 접 수	계	결정									취 하		
						위 헌	헌 법 불 합 치	한 정 위 헌	한 정 합 헌	인 용	합 헌	기 각	각 하	기 타			
2015	합계	2,683	824	1,859	1,937	47	15			48	176	203	1,421	1	26	746	
	위헌법률	87	50	37	44	21	1				20		2			43	
	정당해산	1		1												1	
	권한쟁의	11	3	8	2					1			1			9	
	헌법소원	계	2,584	771	1,813	1,891	26	14			47	156	203	1,418	1	26	693
	§68①	1,765	440	1,325	1,375	6	10			47		203	1,090	1	18	390	
	§68②	819	331	488	516	20	4				156		328		8	303	
2016	합계	2,697	746	1,951	1,976	33	9	1		58	179	214	1,418	3	61	721	
	위헌법률	63	43	20	27	12	2				4		5		4	36	
	탄핵	1		1												1	
	정당해산	1	1		1								1				
	권한쟁의	18	9	9	5								3		2	13	
	헌법소원	계	2,614	693	1,921	1,943	21	7	1		58	175	214	1,409	3	55	671
	§68①	1,769	390	1,379	1,373	17	2	1		58		214	1,050	2	29	396	
	§68②	845	303	542	570	4	5				175		359	1	26	275	
2017	합계	3,347	721	2,626	2,425	4	1			38	116	177	2,064		25	922	
	위헌법률	71	36	35	11	1					10					60	
	탄핵	1	1		1					1							
	권한쟁의	15	13	2	2								2			13	
	헌법소원	계	3,260	671	2,589	2,411	3	1			37	106	177	2,062		25	849
	§68①	2,383	396	1,987	1,873	1	1			37		177	1,633		24	510	
	§68②	877	275	602	538	2					106		429		1	339	

구 분		접수			처리											미 제
		계	전 년 미 제	금 년 접 수	계	결정									취 하	
						위 헌	헌 법 불 합 치	한 정 위 헌	한 정 합 헌	인 용	합 헌	기 각	각 하	기 타		
2018	합계	3,349	922	2,427	2,447	57	59			52	108	271	1,850		50	902
	위헌법률 권한쟁의	77	60	17	39	8	18				10		3			38
		15	13	2	5								2		3	10
	헌 법 소 원	3,257	849	2,408	2,403	49	41			52	98	271	1,845		47	854
	§68①	2,329	510	1,819	1,824	5	10			52		271	1,441		45	505
	§68②	928	339	589	579	44	31				98		404		2	349
2019	합계	3,632	902	2,730	2,519	8	7			34	142	206	2,076		46	1,113
	위헌법률 권한쟁의	69	38	31	18	5	1				11		1			51
		16	10	6	5					2		2	1			11
	헌 법 소 원	3,547	854	2,693	2,496	3	6			32	131	204	2,074		46	1,051
	§68①	2,567	505	2,062	1,946	3	4			32		204	1,663		40	621
	§68②	980	349	631	550		2				131		411		6	430
2020	합계	4,354	1,113	3,241	3,042	10	7			64	162	230	2,515		54	1,312
	위헌법률 권한쟁의	71	51	20	20	7	4				8				1	51
		16	11	5	11							5	6			5
	헌 법 소 원	4,267	1,051	3,216	3,011	3	3			64	154	225	2,509		53	1,256
	§68①	3,093	621	2,472	2,283	1	2			64		225	1,946		45	810
	§68②	1,174	430	744	728	2	1				154		563		8	446
2021	합계	4,139	1,312	2,827	2,621	15	4			46	126	217	2,161		52	1,518
	위헌법률 탄핵	89	51	38	19	6	2				9		2			70
		1		1	1								1			
	권한쟁의	7	5	2	1							1				6
	헌 법 소 원	4,042	1,256	2,786	2,600	9	2			46	117	216	2,158		52	1,442
	§68①	3,011	810	2,201	2,105	6	1			46		216	1,791		45	906
	§68②	1,031	446	585	495	3	1				117		367		7	536

구 분		접수			처리											미 제
		계	전 년 미 제	금 년 접 수	계	결정									취 하	
						위 헌	헌 법 불 합 치	한 정 위 헌	한 정 합 헌	인 용	합 헌	기 각	각 하	기 타		
2022	합계	4,347	1,518	2,829	2,675	26	30			30	113	196	2,241		39	1,672
	위헌법률	113	70	43	37	17	8				7		2		3	76
	권한쟁의	11	6	5	4					1		1	2			7
	헌 계	4,223	1,442	2,781	2,634	9	22			29	106	195	2,237		36	1,589
	§68①	3,228	906	2,322	2,208	5	11			29	1	195	1,935		32	1,020
소원	§68②	995	536	459	426	4	11				105		302		4	569
2023	합계	4,263	1,672	2,591	2,659	38	14			50	220	253	2,042		42	1,604
	위헌법률	101	76	25	48	25	7				11		2		3	53
	탄핵	4		4	1							1				3
	권한쟁의	17	7	10	8					2		2	4			9
	헌 계	4,141	1,589	2,552	2,602	13	7			48	209	250	2,036		39	1,539
소원	§68①	2,955	1,020	1,935	1,999	3	5			48	6	250	1,659		28	956
	§68②	1,186	569	617	603	10	2				203		377		11	583
	2024	합계	4,126	1,604	2,522	2,725	47	15			44	217	339	2,021	2	40
위헌법률		71	53	18	28	14	5				7		2			43
탄핵		12	3	9	2							2				10
권한쟁의																
헌 계		18	9	9	3					1			1	1		15
소원	§68①	4,025	1,539	2,486	2,692	33	10			43	210	337	2,018	1	40	1,333
	§68②	2,744	956	1,788	1,925	5	4			43	9	337	1,497		30	819

자료: 헌법재판소